2026-3 세무회계경영저널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2026 3 Monthly Magazine

통 권 268호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2025 사업연도 귀속 법인결산 세무해설과 법인세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의 서식작성사례 및 최종점검표 (국세청자료)

기업의 회계결산완료 (1월~2월중)

이사의 재무제표작성과 이사회승인 →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외감법 적용 회계감사(2~3월 중) → 상법상 내부감사의 검토와 감사보고

결산확정 (늦어도 3월중까지)
-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상법절차에 의함)

세무조정

법인세법상의 재무상태표 신문공고 의무규정은 삭제
-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대차대조표 신문공고 안해도 되며, 가산세 등 불이익도 없음(그러나 상법이나 정관에 대차대조표의 공시의무규정은 있으므로 상법상으로는 대차대조표 공시가 원칙임 : 신문공고나 전자공시 등 여러방법 활용가능)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납부 ·분납 :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즉 3월 31일까지임)
- ① 재무상태표
- ② 포괄손익계산서
-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④ 세무조정계산서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조정서명이 필수적임)
- ⑤ 기타의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감대상)

재무제표는 비교식이 원칙임. 필수첨부서류 (①, ②, ③, ④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마감 (늦어도 4월 14일)

·연결재무제표 제출 (4월말까지)
·회계감사인선임계약 (4월말까지 날인)
·감사계약체결보고 (2월 14일까지 금감원, 한공회 신고)

누락, 오류, 탈루 사항은 회사가 추후 수정 가능함. (세무서가 보정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과소신고 이었다면 → ·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는(언제나 가능)

과다신고 이었다면 → ·감액경정청구 : 적법신고기한 경과후 3년내(2006년분부터)

안안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안세 회계 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3
+교육·훈련강의저널
+CEO·CFO 기업법무저널

2025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와 관련해설

회계결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 ····· 2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 4
Ⅱ.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19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117
Ⅳ.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 143
• 주요통화별 12월 31일 결산환율 ····· 109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 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2월) 144

2025 Corporate Accounting Settlement and Final Checklist for Corporation Tax Return

Completion of Accounting Settlement(during Jan. & Feb.) →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 by Director and the Approval by Board of Directors → Audit by Accountant Auditor based on External Audit Law(during Feb. & Mar.) → Review of Internal Audit based on Commercial Law and Reporting of Audit

↓

Approval of Final Accounts Statement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General Merbers Meeting

Finalization of Settlement (within March at the latest)

Tax reconciliation

Deletion of mandatory provision of newspaper announcement of Balance Sheet upon Corporate Tax Law

The announcement of Balance Sheet in newspaper is not necessary from the fiscal year including Dec. 31, 2001(However, as there is a mandatory provision of public announcement of Balance Sheet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and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principle is to make public announcement of balance sheet upon Commercial Law : Several ways of announcement thru newspaper or e-tool can be utilized.

Within 3 months from the closing date of Fiscal Year (i.e. till March 31)

◦Report of tax Return and Payment of tax(Reporting must be done till Mar. 31 every year.)
◦Paying in installment : till Apr. 30(till may 31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1.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2. Income Statement
3. Statement of ap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 (Or, Statement of appropriations of Loss)
4. Tax return report (It is mandatory to have accountant to sign on external reconciliation)
5. Appendix of tax return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and others

The principle is that the Fiancial statement should have a comparitive Mandatory attachements (If any one of 1,2,3,4 is missing, penalty tax of non-reporting can be imposed.

Company can amend any errors and omitted items afterward. (Tax office might require supplement and amendment)

Closing of presentation of audit report by accountant (till Apr. 14th at the latest)

If returned shortly → Revision report of increased amount : Always possible till the jurisdictional tax office requires the revision.

◦Present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till the end of Apr.)
◦Appointment of auditor(till the end of Apr.)
◦Reporting of audit contract(within 2 weeks, which is till Feb. 14th)

If returned excessively → Revision report of reduced amount : within 3 years upon due date of report (from year 2006)

202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관련해설

[국세청], 2026. 3. 발간내용 중에서 핵심내용을 발췌하고 요약함

회계결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광의의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표시) (＝수익－제반비용·원가)	＋	협의의 세무조정(소득금액조정) ⊕가산항목:⊕익금산입⊕손금불산입 ⊖차감항목:⊖익금불산입⊖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 (1과세기간의 세무상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10년전까지 인정) ＋중소기업은 1년후 결손도 소급공제 환급하여 기납부세 환급됨.	－	비과세소득 (특별혜택항목)	－	소득공제 (특별공제항목)	＝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대상금액)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비교

법인세 과세표준×세율 (2억원까지:9%, 200억이하:19%, 3,000억원 이하:21%, 3,000억 초과 : 24%)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 × 세율(10%) * 주택양도 등 미등기 40%

(초과이익의 추가법인세)

＝ 산출세액 － 면제·감면·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중간예납 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가산세액＝ 자진신고 납부세액

(분납 1월(중소기업 2개월)·일시)납)

□결산 조정(주로 기업내부의 판단·측정으로 회계처리 재무제표 반영할 거래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④ 대손충당금(법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⑥ 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7)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19의2③2)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법§42③1)
⑧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법§42③2)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⑩ 주식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31⑦)

□신고 조정(주로 대외적 지출·구입·자금수지 거래임)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6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령§64 ~ §66)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가. 법인세 납세의무자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 6. 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

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외국법인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134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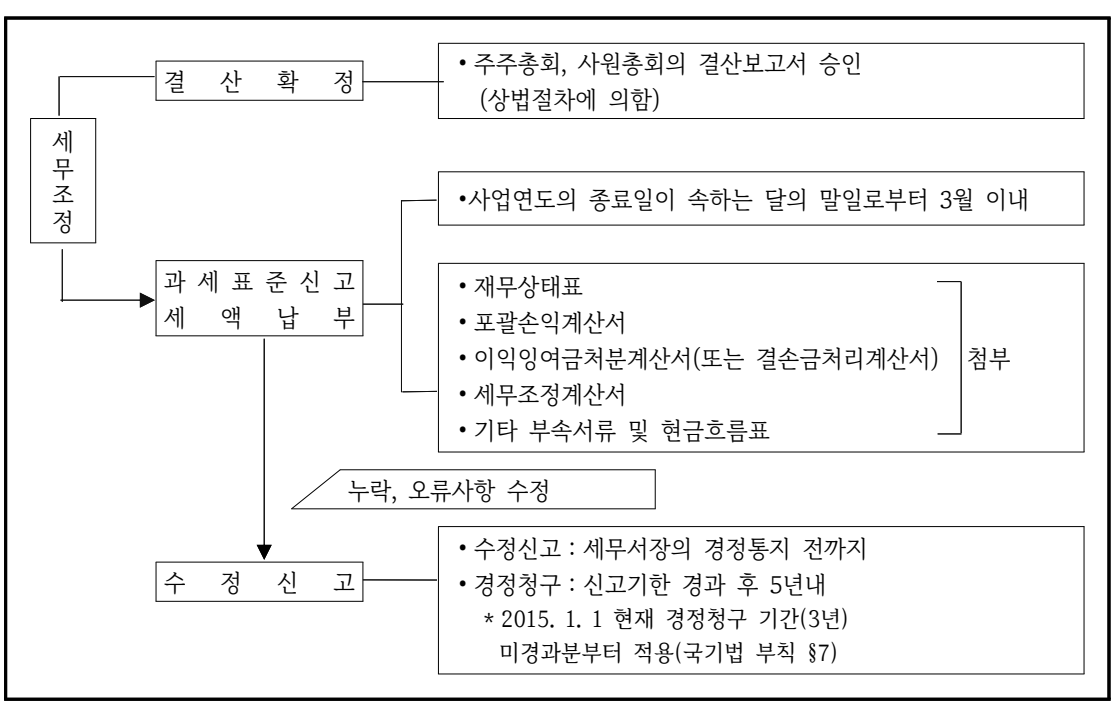

가.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즉,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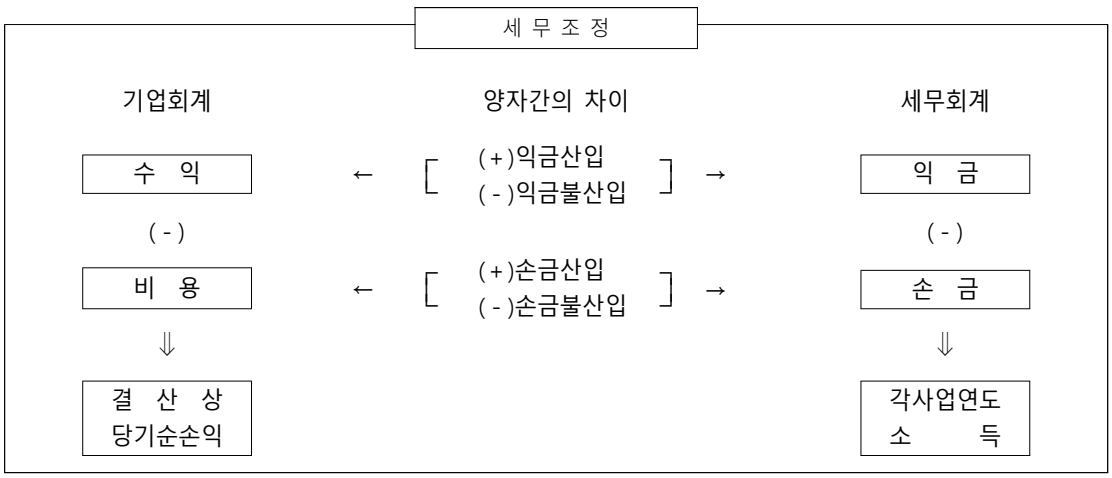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2] 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④ 대손충당금(법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⑥ 법령§19의2①(7)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19의2③(2))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법§42③(1))
⑧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법§42③(2))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⑩ 생산설비의 폐기손실(법령§31⑦)

[3] 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

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 §18·6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령§64, 내지§66)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법§28①3호)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4]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세무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세무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법§60⑤, 법법§60⑨, 국세기본법§47의2①).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법령§97의2①)(단, 조특법§72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1~3호 :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1]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30일(12월말 법인의 경우)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60⑦~⑧)

[2]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 §60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규칙 §82①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② 및 ④의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령 §97⑪)

[3] 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

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12월말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4-30호)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법령§97⑤단서, 법칙§82③)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025-1호).

  * 수동제출 또는 전자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5] 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분납(법 §64②)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6]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시행령 §2~§4)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경우
④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⑥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⑦ 위 ①, 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7] 세액의 환급

○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당초신고의 변경

[1]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45)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및 §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 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수정신고 사유(국세기본법 §45 ①)
-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 §48)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0.1.1. 이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2020.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45의2)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및 국기법§45의3①에 따른 기한후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5. 1. 1. 현재 경정청구기간(3년) 미경과분부터 적용(국기법 부칙§7)

○ 경정청구 사유(국기법§45의2①)
-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②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2016.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 1. 1. 전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적용)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심판의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경정 등으로 인하여 경정 등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⑤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⑥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⑦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국세기본법 §47~§47의5)

-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신고한 경우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 국제거래 60%)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법령 §106)

-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국기법 §66)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3.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조특령 §2 ①)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2)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 : 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4) 기업집단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2)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중기령 [별표1]의 평균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

(3)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4)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영 §2③)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조특영 §2 ②)

(1)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영 §2⑤)

(2)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코스피·코스닥상장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2024.11.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그 이전은 3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3)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 §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법법§25) (조특법§136)	- 용인한도액 한도액=① + ② + ③+④ ① 1,200만원 ×당해 사업연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적용률(0.3%,0.2%,0.03%) + 특수관계자 거래수입금액 ×적용률×10% ③ min[문화기업업무추진비,(① + ②)×20%] ④ min[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① + ②)×10%]	- 용인한도액 한도액=① + ② + ③+④ ① 3,600만원 ×당해 사업연도 월수/12 ② ~ ④ 좌동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법법§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table>
<tr><th>내 용</th><th>일 반 법 인</th><th>중 소 기 업</th></tr>
<tr><td>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td><td>해당없음</td><td>창업후(벤처기업 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75, 100)% 감면</td></tr>
<tr><td>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2005.1.1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td><td>해당없음</td><td>
<table>
<tr><th>구분</th><th>소재지</th><th>업종</th><th>감면율</th></tr>
<tr><td rowspan="6">소기업</td><td rowspan="3">수도권</td><td>출판업, 제조업 등</td><td>20</td></tr>
<tr><td>도소매, 의료업</td><td>10</td></tr>
<tr><td>통관대리 등</td><td>10</td></tr>
<tr><td rowspan="3">수도권 외</td><td>제조업 등</td><td>30</td></tr>
<tr><td>도소매, 의료업</td><td>10</td></tr>
<tr><td>통관대리 등</td><td>15</td></tr>
<tr><td rowspan="4">중기업</td><td>수도권</td><td>출판업</td><td>10</td></tr>
<tr><td rowspan="3">수도권 외</td><td>제조업 등</td><td>15</td></tr>
<tr><td>도소, 의료업</td><td>5</td></tr>
<tr><td>통관대리 등</td><td>7.5</td></tr>
</table>
* (한도) 기본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1인당×5백만원
</td></tr>
<tr><td>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7의4)</td><td>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td><td>○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구매대금 지급한 경우
-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5%
- 지급기한 16일～30일내 지급금액 × 0.3%
- 지급기한 31일～60일내 지급금액 × 0.15%
* 세액공제 한도 : 법인세의 10%</td></tr>
<tr><td rowspan="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10)</td><td>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25%+α)</td><td>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 40%
[30% +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td></tr>
<tr><td>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40% [30%+ (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td><td>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50%
[40%+(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td></tr>
<tr><td>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25%
② 당해연도 R&D비용 × 기본0% + 최대 2%
(매출액 대비 R&D 비중의 1/2배*)]
* 최대 2%</td><td>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30%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 50%
② 당해연도 R&D비용 × 25%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20%, 그 이후 2년간 15%</td></tr>
</table>

<table>
<tr><td></td><td>※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40%
② 당해연도 R&D 비용×8%</td><td>☞ 중견기업(조특령§9④)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td></tr>
<tr><td rowspan="2">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td><td>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td><td>-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td></tr>
<tr><td>-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 '22.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td><td>-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 25% 감면</td></tr>
<tr><td>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조특법§13의2)</td><td>중소기업과 동일</td><td>-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td></tr>
<tr><td>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19)</td><td>해당없음</td><td>-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 최대주주 등,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 '24.12.31.까지 경영성과급의 15%</td></tr>
<tr><td>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td><td colspan="2">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시설투자</td><td colspan="3">당기분(%)</td><td rowspan="2">증가분(%)</td></tr>
<tr><td>대</td><td>중견</td><td>중소</td></tr>
<tr><td colspan="2">일 반[1)]</td><td>1</td><td>5(7)</td><td>10(12)</td><td rowspan="4">10</td></tr>
<tr><td colspan="2">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8)</td><td>12(14)</td></tr>
<tr><td colspan="2">국가전략기술[2)]</td><td>15</td><td>15</td><td>25</td></tr>
<tr><td></td><td>반도체기술</td><td>20</td><td>20</td><td>30</td></tr>
</table>
1) 공제대상자산 : 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 일부 유형자산(①제외)과 무형자산
2) '21.7.1. 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는 ( )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단, 공제율은 '23년 공제율과 상이)
3) 국가전력기술 중 반도체기술에 대해서는 5%p 상향('25.1.1. 이후 투자분부터)
</td></tr>
<tr><td>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25의6)</td><td>- 국내·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대기업), 10%(중견기업)
- 국내제작비용 비율 요건(80% 이상)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10%</td><td>- 국내·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5%
- 국내제작비용 비율 요건(80%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15%
* 공제시기 : 방송·영화상영이 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td></tr>
<tr><td rowspan="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의4)</td><td>-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10%(중견기업)
* '23년 이후 대기업 제외</td><td>-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20%</td></tr>
<tr><td>-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 증가액 합계×10%(중견기업)
* '23년 이후 대기업 제외</td><td>-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20%</td></tr>
</table>

<table>
<tr><th>내 용</th><th>일 반 법 인</th><th>중 소 기 업</th></tr>
<tr>
<td>통합고용세액공제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 ’25.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통합고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복 적용 불가)</td>
<td>■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아래 금액
<table>
<tr><th>구 분</th><th>중견기업</th><th>대기업</th></tr>
<tr><td>상시근로자</td><td>450</td><td>-</td></tr>
<tr><td>청년 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td><td>800</td><td>400</td></tr>
</table>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년, 중견기업 3년 적용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table>
<tr><th>구 분</th><th>중견기업</th><th>대기업</th></tr>
<tr><td>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td><td>900</td><td>-</td></tr>
</table>
* 정규직 전환자는 ’24. 12. 31.까지 전환자</td>
<td>■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아래 금액
<table>
<tr><th>구 분</th><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r>
<tr><td>청년 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td><td>1,450</td><td>1,550</td></tr>
</table>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table>
<tr><th>구 분</th><th>중소기업</th></tr>
<tr><td>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td><td>1,300</td></tr>
</table>
* 정규직 전환자는 ’24. 12. 31.까지 전환자</td>
</tr>
<tr>
<td>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0의3)</td>
<td>- 위기지역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td>
<td>-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td>
</tr>
</table>

Ⅱ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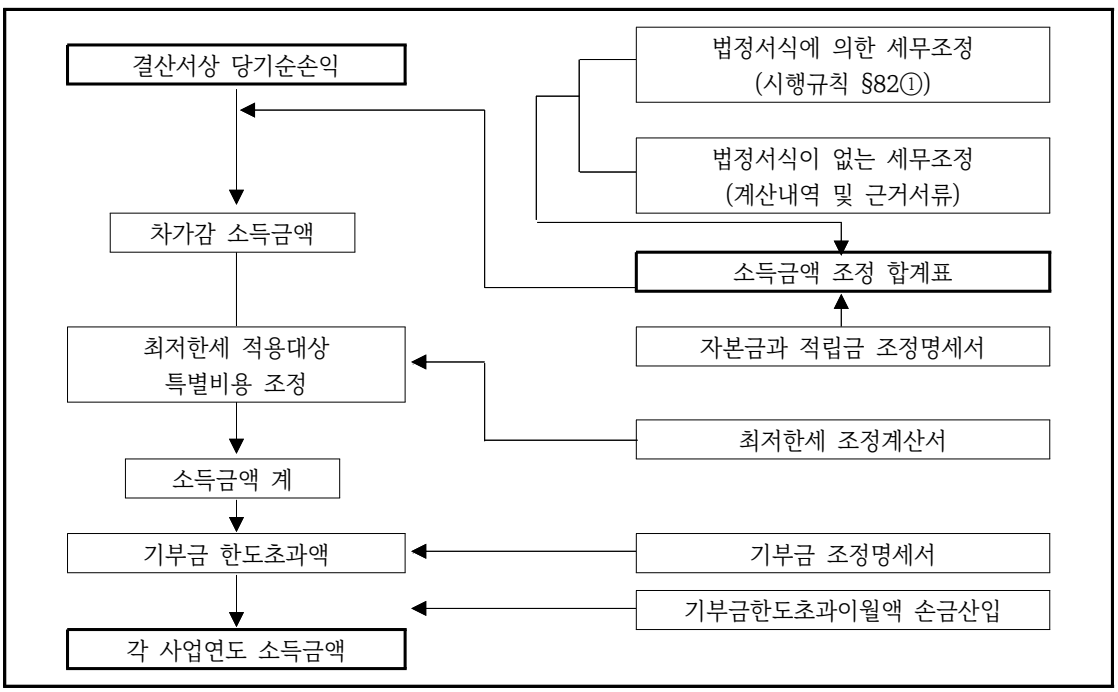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합니다.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 §15①)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법 §19①)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가. 익금의 주요내용

○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의 범위

①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법령§11(1))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금액 제외
-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포함
-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금융기관의 정기 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적용

* 정기예금이자율 : 202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3.1%(법칙§6)

② 자산의 양도금액(법령§11(2))
③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의 양도금액(법령§11(2의2))
④ 자산의 임대료(법령§11(3))
⑤ 자산의 평가차익(법령§11(4))
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령§11(5))
⑦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익)(법령§11(6))
⑧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법령§11(7))
⑨ 법령§88①8 각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법령§11(8))
⑩ 법법§28①(4)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등"이라 함)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법령§11(9))
가. 법령§2⑧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
나. 법령§2⑧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법§28①(4)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⑪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차익(법법§15②(1))
⑫ 오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법§57④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법법§15②(2))
⑬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법법§15②(3))
⑭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⑧"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이번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재산세·자동차세·공과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받는 금액과 대손충당금, 준비금과 같이 비

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기한도래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특정익금

○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산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 §16)

○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잉여금의 자본 전입·해산 또는 합병·분할한 경우에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감자·탈퇴·퇴사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또는 사원의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배당의제액 =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 납입자본금이 15억원(1주당 액면가 : 1만원, 발행주식수 : 15만주), 잉여금이 7억원인 법인이 자본금 5억원을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하면서 1주당 15,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던 甲법인(1주당 취득가액 10,000원)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甲법인이 취득하는 금전 = 15,000원×50,000주×40% = 300백만원

ⅱ)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 10,000원×50,000주×40% = 200백만원

ⅲ) 의제배당액 : ⅰ) - ⅱ) = 100백만원

현금	300백만원	/	관계회사주식	200백만원
			의제배당	100백만원→익금산입

- 감자법인의 회계처리(감자차손은 잉여금과 상계처리)

자본금	500백만원	/	현금	750백만원
감자차손	250백만원			
잉여금	250백만원	/	감자차손	250백만원

(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법령§12)

법인이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잉여금

- 채무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법법§17①(1)단서)
- 적격 합병·분할에 따른 합병·차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합병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 합병차익 한도)	분할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 분할차익 한도)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16①(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자본전입 순서 :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대상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	

☞ 2019.2.12. 이후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자산재평가법 §13①1호(1% 세율)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 소각일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등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24.2.29.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이외의 잉여금

②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분할차익(2010. 6. 30. 이전 합병·분할평가차익 등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13①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외)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다)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나)②"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라) 해산의 경우

주주 등이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자산가액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마)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하거나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바) 분할의 경우

분할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금전 이외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

유 형	재 산 가 액	
(나),(다)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마),(바)의 경우	2010. 6. 30 이전 합병·분할	2010. 7. 1 이후 합병·분할
• 적격합병·분할 충족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시가>액면가액·출자금액 경우)	종전의 장부가액
• 적격합병·분할 미충족	시 가	시 가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	
기타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	

* 다만, (나),(다),(마),(바)의 경우 투자회사 등의 취득하는 주식 등은 "0"으로 함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적용범위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나)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출자금,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다) 시가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저가매입 차액의 처리

① 익금산입시기 : 그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저가매입차액의 세무조정

저가매입차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세무계산상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동 유가증권 양도 시 손금산입합니다.

구 분	저가매입차액의 처리	세무계산상 자산취득가액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경우	익금산입 유보처분 ⇨ 매입 시 과세	시가(저가매입차액을 유가증권 취득가액에 가산)
기타의 저가매입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처분 시 과세	취득가액

[3]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의 환입액

[4]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특법 §138)

[5] 잉여금의 증가항목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목 (영 §88)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참조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되는 아래 항목 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세법상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나. 손금의 주요내용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손비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법령§19①(1))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하되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는 경우도 포함(법령§19①(1의2))
③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법령§19①(2))
④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를 포함(법령§19①(3))
⑤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법령§19①(3의2))
⑥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및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법령§19①(3의3))
  * 202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⑦ 유형자산의 수선비(법령§19①(4))
⑧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법령§19①(5))
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실제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취득가액과 장부 가액과의 차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법령§19①(5의2))
⑩ 자산의 임차료(법령§19①(6))
⑪ 차입금이자(법령§19①(7))
⑫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부가법§45에 따라 대손 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함)(법령§19①(8))
⑬ 자산의 평가차손(법령§19①(9))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2001. 12. 31. 신설)
⑭ 제세공과금(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함)(법령§19①(10))
⑮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법령§19①(11))
⑯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법령§19①(12))
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가액(법령§19①(13))
⑱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17. 2. 4. 이후 기증분 부터 적용)(법령§19①(13의2))
⑲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법령§19①(14))

⑳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법령§19①(15))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㉑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법령§45)
* 이 경우 직원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함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에서 열거한 비용과 유사한 비용

㉒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법령§19①(16))

㉓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서 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의 금액(법령§19①(17))
* '19. 2. 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1천만원으로 인상(종전 5백만원)

㉔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 연간 5만원 이내 금액](법령§19①(18))

㉕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법령§19①(19))

㉖ 「상법」 제340조의2 · 제542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 ((법령§19①(19의2))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㉗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법령§19①(20))

㉘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㉙ 임원·직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법령§19①(21))

㉚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법령§19①(22))

㉛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상품권 사용용도에 따른 손금인정 범위 : 일반경비와 같이 사업관련성·사용용도 등에 따라 구분

사업관련성	사용용도	세무처리(관련법령)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	차량유류대	손금인정 (법인세법 §19)
	종업원 복지후생	손금인정 (법인세법 §19)
	상품, 제품, 원·부자재 구입	손금인정 (법인세법 §19)
	종업원 급여성 경비	손금인정 (법인세법 §19)
	기업업무추진 관련 경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법인세법 §25, 조특법§136)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	국가, 공익성 단체등에 기부 (특례・일반기부금 등)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법인세법 §24)
	기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비지정기부금 등)	손금불인정 (법인세법 §27)

* 상품권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기타 특정 손금

○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책임준비금(법 §30)
- 퇴직급여충당금(법 §33)
- 대손충당금(법 §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 §35)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손실준비금 (자본확충 및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 등)
- 기타 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대부분 일몰종료,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은 '09. 1. 1. 부활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조특법§38)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이연(조특법§38의2)
- 다음의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조특법§39①)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2026.12.31.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한 경우(조특법§39①(1))
  -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7.12. 31.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경우(조특법§39①(2))

- 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26.12.31.이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산 장부가액 손금산입(조특법§40②)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26.12.31.까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조특법§44④)
- 2026.12.31.이전에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 주주가 보유한 출자지분 전부를 증여하여 무상 소각한 경우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법인주주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조특법§45②)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2026.12.31.까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조특법§52)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7.12.31.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조특법§104의11)
- 신용회복목적회사가 2026.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104의12)
- 대학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을 위해 보유하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3년 거치 3년 균등 환입), 대학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대학에 출연하는 금액 손금산입(조특법§104의16)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모회사가 2026.12.31.까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시 모회사의 채무 인수·변제액 손금산입(조특법§121의27)
• 사업재편 과정에서 2026.12.31.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이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조특법§121의29)

④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 §36~§38)

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 §29, 조특법 §7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36①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⑥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법 §44, §46('09. 12. 31. 개정전)]

☞ 2010. 6. 30. 이전 합병·분할 시에만 해당됩니다.

⑦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 §47)

⑧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 §50)

⑨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 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영 §7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예) 리스회계처리준칙,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은행업회계처리준칙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 상법 시행령§15(3)에 따른 회계기준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 판매수익 (영 §68)

①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8의2④(1)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393①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⑥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포함)로서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판매수익

- ① 및 ③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결산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 다만, 중소기업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로 신고조정 선택 가능(201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 (영 §69)

○ 적용대상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예약매출 : 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 귀속사업연도

- 작업진행률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및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선택 가능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기준 허용은 2012. 2. 2.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가능

• 익금산입액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text{* 작업진행률} = \frac{\text{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text{총공사예정비}}$$

*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임.

* 작업진행률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생산량기준법·투입량기준법으로 산정가능

•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3] 이자수입 등 (영 §70)

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 영업수익인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부금, 수입보증료, 수입수수료
  →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보험료, 선수입부금, 선수입보증료, 선수수수료 등
  → 당기 수익계상 불가함.
  ☞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영 §111②)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이자(법 §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
  →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증권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할인료 및 보험료 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법령§70⑥, 2023.3.28.신설)

②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 소득세법 §16①12호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소득세법 §16①12호 : 소득세법 §16①1호 내지 11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46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 §46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 등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저축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달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 시 그 해지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③ 수입배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 : 잉여금처분결의일
○ 주식의 소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감자를 결정한 날
○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4] 임대료 등 기타 수익 (영 §71)

① 임대료 수익
-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 소득세법 §162 및 부가가치세법 §36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
-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④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징발재산의 매도에 따른 익금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징발보상증권을 받은 경우
  - ㅇ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 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자산의 원가는 손금산입)
  - ㅇ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 •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과 손금을 계상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 K-IFRS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던 종전의 방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2012. 2. 2.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⑦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24①2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 · 장치 · 제품 · 공정 · 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⑧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

-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⑨ 기타 익금

ㅇ 관세환급금
-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날

ㅇ 국고보조금 : 교부통지를 받은 날

ㅇ 보험차익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

ㅇ 수용에 따른 보상금 : 지급이 확정된 날 또는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의 차액은 조정금액이 확정된 날)

ㅇ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 : 당해 물품 선적일(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ㅇ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이자 :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ㅇ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매입한 물품을 국내판매 시의 수익
- •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 계약금 영수에 불구하고 외국항구에서 선적된 날

ㅇ 가입회비(입회금)
-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 :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으로 처리

- 회원자격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가입회비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가입회비를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회비를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손해배상금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

② 기타의 손비

○ 매출할인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 지급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45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 자산의 평가손실(법 §42③)

-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법§42③(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법령§78③)

○ 기부금

-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며, 수표의 경우 교부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 보험기간 만료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그 보험료액 중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함.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지급지연함으로써 그 금액

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지급이자 중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준공된 날」이라 함은 (영 §52 ⑥)
건축물의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날을 말하며, 토지·건물외의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을 말함.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 원자재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며
- 법인세법 시행규칙 §37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봄.

☞ 종전에는 은행 신용공여방식(Banker's Usance)에 의한 이자만 손금계상 가능하였으나 2007. 3. 30.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는 D/A방식과 수출자 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한 이자의 경우도 비용처리 가능

○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보험료가 확정된 날

○ 조세·공과금

-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인지세 :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용한 날
  - 재산세·균등할주민세 및 종합토지세 : 고지일
  - 등록세 : 등기일(취득원가에 산입)
  - 취득세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 : 대금결제일·주권인도일·권리이전일
  - 추가로 확정된 세액 : 당해 세액 고지일(원칙), 의제매입세액 추가 납부는 사유 발생일(서면2팀-460, 2004. 03. 16)

4. 익금항목의 조정

가. 수입금액의 조정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1]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영 §68)

① 상품·제품 등의 판매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품·상품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영 §68①)

○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범위(법칙 §33)

- 국내판매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 :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때 (통칙40-68…2)
- 물품판매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불구하고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대법82누114, 1982. 10. 12)(통칙40-68…1)

② 시용판매 : 상대방이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정형화된 유가증권의 양도 : 매매계약 체결일(재법인46012-71, 2001. 3. 28)

⑥ 매출할인(영 §68 ⑤)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

⑦ 매출에누리 : 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 (법인46012-3117, 1997. 12. 3)

⑧ 판매장려금 :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 (서면2팀-526, 2005. 4. 11)
- 거래수량,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장려금 : 판매한 날(법인22601-215, 1987. 1. 27)

[2]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앞부분[1]의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습니다.(영 §68②.단서, '10. 12. 30. 신설)
  * K-IFRS에서는 회수기준 선택이 금지되어 있어, K-IFRS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회수기준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K-GAAP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영 §68④)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 목적물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영 §69)

○ 내국법인의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영 부칙 §14①, 2012. 2. 2)
-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통칙(40-69…4)을 영에 명시하여 명확화 하였음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69②).
  *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법칙§34④)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방법(규칙 §34)
• 익금(각사업연도소득) = [계약금액×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text{작업진행률} = \frac{\text{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text{총공사예정비}}$$

○ 2007. 3. 30. 이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

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
-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을 조정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 개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 : 반출 및 판매 현황과 비교 검토
- 기타사항
  - 재무상태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의 적정여부 확인
  - 본·지점간 내부미실현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확인
  - 수입금액·판매장려금 누락분, 수정신고분, 조사분 반영 여부 등 확인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 직전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충당금 등은
  - 계속하여 법인에 유보시켜 손금이 실제로 발생될 때에 상계하는 것과
  - 일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손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 §29) (조특법 §74)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다음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 해산한 때 •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된 때 •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책임준비금 등 (법 §30)	다음 사업연도	일시	- 직전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을 일시 익금산입 * 2009. 1. 1부터 3년 후 익금산입 추가

4) 대손충당금 (법 §34)	다음 사업연도	일시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액중 당해 사업연도 발생한 대손금을 상계한 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5)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법 §35)	다음 사업연도	일시	- 대손충당금과 같은 방법으로 익금산입
7)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조특법 §104의12) * 2010.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준비금과 상계 미사용분 일시	- 손실이 발생할 때에 손실보전준비금과 상계 - 준비금과 상계 후 잔액을 1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조특법 §138)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당해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3.5%)을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주택과 주택의 연면적,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1] 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일 것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을 포함(법인46012-2896, 1996. 10. 18.)
-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99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 \text{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 \times \frac{\text{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text{당해건물의 연면적}}$$

☞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건설비총액을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함.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적수기준)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변동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

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함

[2] 간주익금의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0"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수는 매월 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left[\text{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text{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right] \times \frac{\text{정기예금이자율}}{365(\text{윤년 } 366)}$$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을 차감한 금액

○ 위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는

- 당해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조특규칙 §59③)

○ 간주익금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 미수이자도 포함됩니다.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①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text{지하도의 건설비 적수 총계} \times \frac{\text{임대면적의 적수}}{\text{임대가능면적의 적수}}$$

② "①" 이외의 임대부동산

$$\text{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적수 총계} \times \frac{\text{임대면적의 적수}}{\text{건물연면적의 적수}}$$

☞ 1991. 1. 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은 다음 ⓘ, ⓘⓘ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일부 임대시는 임대면적비율로 안분함)

ⓘ 건축물의 취득가액(불분명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함)

ⓘⓘ 건축물 연면적에 199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보증금÷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조특규칙 §59 ⑤)

-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이 부수(－)인 때에는 "0"으로 합니다.

○ 정기예금이자율(법칙§6)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3.4%	2.9%	2.5%	1.8%	1.6%*	1,8%	2.1%	1.8%	1.2%	2.9%	3.5%	3.1%

* '25. 3. 21. 개정(2025. 1. 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분부터 3.1% 적용)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영 §88①.6, §89③)

○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법령§89③)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
    * 대여일(계약 갱신한 경우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상환일)까지 기간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 선택 사업연도 + 그 후 2개 사업연도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법칙§43③)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66호 2012. 2. 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인-431, 2012. 6. 28)

○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5, 2016.10.12.)

조정에 필요한 내용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제 대상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 §44, 1호)

☞ 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종합소득 총결정세액× $\frac{\text{미지급소득}}{\text{종합소득금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는 가지급한 등으로 계산한 금액(규칙 §44, 2호)

☞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규칙 §44, 3호)

☞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규칙 §44, 4호)

☞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 §44, 5호)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규칙 §44, 6호)

⑦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규칙 §44, 7호)

⑧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법칙§44(7의2))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규칙 §43①)

-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칙§43①).
-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채권자불분명 사체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법칙§43⑥).

[3] 당좌대출이자율이란

○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 2002. 1. 1. 이후 : 9% (국세청고시 제2001-31, 2001. 12. 27)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8.5% (시행규칙 §43 ②, 2009. 3. 30. 개정)
- 2012.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6.9% (시행규칙 §43 ②, 2012. 2. 28. 개정)
- 2016. 3. 7.이후 : 4.6%(시행규칙§43②, 2016. 3. 7. 개정)

☞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2016.3.7. 법칙 부칙 11조)

[4] 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87)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법인과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401의2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국기령§1조의2 ①에 따른 자)

②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 소액주주 등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법령§50②)

③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④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⑥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기령§1의2④에 따름

※ 종전에는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하도록 기본통칙 통칙 52-87…1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2. 2. 시행령 개정시 본인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문화 하고, 제2차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종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영 §87①)

☞ 2012. 2. 2.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법법§17①)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단, 2012.4.15.이후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 합병·분할차익

②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가능(법법§17②)

③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법법§18조)
- 자산의 평가이익(단, 보험업법 등에 의한 자산의 평가증액, 재고자산 등 법령§73의 재고자산 등의 자산을 법령§74~§77에 따라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은 제외)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타 법률에 따라 비과세 ·면제된 소득 포함)
-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법법§36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및 채무면제익
-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법법§76의19② 또는 ③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2023.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로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
  - 법법§16①(2)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법법§16①(2)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2024.1.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법법§16①(2)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2024.1.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④ 내국법인(지주회사 포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법§18의2)

내국법인(법법§29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 제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수령시 1호에서 2호를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1호 :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액에 아래의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출자비율	50% 이상	20% 이상 50% 미만	20% 미만
익금불산입률	100%	80%	30%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호 : 차감금액 = 차입금 이자 ×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장부가액적수÷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

태표상 자산총액적수) × 1호 익금불산입률
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법법§18의4)
내국법인(법법§57의2①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제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등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니 아니함
• 외국자회사 :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조특법§22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법§6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2026. 12. 31.까지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조특법§10의2)
- 추후 출연금을 지출하여 손비 처리하는 시점에 익금산입
②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26. 12. 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조특법§34①)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③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2026. 12. 31.까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식발행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조특법§39②)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④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2026. 12. 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결손금 초과하는 자산가액 익금불산입(조특법§40①)
-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 법인주주가 소유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상당액 익금불산입(조특법§40③)
⑤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조특법§44①)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⑥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60②, §61③, §63④, §63의2④)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5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⑦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2023. 12. 31.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85의7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⑧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25. 12. 31.까지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85의8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⑨ 사업재편계획* 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2026. 12. 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 채무상환자금 충당 시 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의26)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시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의27)
- 주주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2026. 12. 31.이전에 무상증여시 수증법인의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의28)
-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26. 12. 31.까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의29)
- 기업간 2026. 12. 31.이전에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조특법§121의30)
- 사업재편을 위해 2026. 12. 31.까지 합병(분할합병 포함, 같은 업종간 합병 한정) 후 1년 내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의31)

6. 손금항목의 조정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1] 책임준비금 (법 §30)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환 입
보험회사(수협 공제사업,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 포함)	①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할 환급액(해약공제액포함) + ②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기발생보험사고에 대한 추정보험금상당액* + ③ 영 §57①3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준비금	①,②는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③은 영 §57②에 따라 처리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은 2013. 2. 15.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23. 2. 28.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2] 비상위험준비금 (법령§57⑦)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처 리 등
보험회사(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무역보험법에 의한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 포함)	○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함)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준비금의 누적액 한도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 보험료의 합계액의 50%(자동차 보험은 40%, 보증보험은 150%*)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준비금의 처리 및 적립대상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시행령§63④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법령§58④)

☞ 201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 §33)

(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함

(나) 손금산입 범위액 : ①·②중 적은 금액

① 총급여액 한도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제외)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	× 5/100

② 누적액 한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과 법령§44의2④1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0/100	+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

* (가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목)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

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16년 폐지)하였습니다. (2010. 12. 30. 개정)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 "총급여액"의 범위

- 위 ①에 의한 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20 ① 1호 및 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법인46012-776, 1998. 3. 30, 서이46012-11521, 2003. 8. 22)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칙 §31①)
- 법령§44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ⅰ), (ⅱ)의 합계액〕

- 법령§44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ⅰ)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

(ⅱ)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제외)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 §3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합니다.(통칙33-60…3)
- 누적액 한도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규칙 §31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에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text{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times \frac{\text{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의 전기말 현재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text{전기말 현재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누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기중 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다) 충당금의 상계(법 §33②)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통칙 33-60…4)

③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통칙 33-60…5)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통칙 33-60…6)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규칙 §31 ②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24①)

☞ 종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원·직원 구분없이 사용자부담금을 전액 손금인정하였으나, 임원에 대하여는 2010. 2. 1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법령§44의2③)

▸ 퇴직금전환금(1999. 4. 1 제도 폐지)

- 1999. 3. 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누적액 한도액에 가산함.(영 §60④)

(라) 특수관계 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선택적용)

◦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에 전출하여 전출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 전출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이

용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전출하는 시점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임원 및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법령 개정시(시행령 §44③, 2009. 2. 4) 임직원의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 세무조정시 전출입 법인의 범위를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 법인으로 개정하였고, 적용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

①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 "근속연수 미통산"

전출법인이 임직원의 전출을 퇴직으로 처리하여 전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전입법인에서는 신규채용으로 처리

②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 "근속연수 통산"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임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근속기간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 없음

- 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직원(이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통칙 33-60…2)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를 인계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으로 부담할 퇴직급여를 계산

※ 미달인계시 세무조정 대상기준(기본통칙 §33-60…2 제2항)
- 관계회사 전출입 : 규칙 §22에 의한 안분계산(추후 정산개념)

- 전출법인이 전출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포함) 임직원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 당초 전출법인의 입사일로부터 전입법인의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급여 총액을 각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안분한 후 일부 인계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함.
  • 전출(전입)법인 ⇨ 전출(전입)한 때를 퇴직(입사)시점으로 보아 안분계산

《안분산식》

• 전출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 $\frac{\text{전출법인의 퇴직급여}}{\text{전출법인의 퇴직급여 +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 전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 $\frac{\text{전입법인의 퇴직급여}}{\text{전출법인의 퇴직급여 +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마) 퇴직금의 범위

○ 직원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영 §44 및 규칙 §22)

-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하여 지급한 때
  ☞ 2012.7.26.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11967호)가 시행됨에 따라 직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가능 (근퇴법§8②)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일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3개월 이상 장기요양(배우자·부양가족 포함), 천재·지변]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규칙 §22②)

○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영 §44④)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그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영 §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근속연수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규칙 §22 ⑤)

(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영 §44②. 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여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동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에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호봉·상여 등을 누진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으로 봅니다.

○ 2012. 7. 26 이후에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중간정산 하는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외에 중간정산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해당 근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규칙 §23 각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 §44의2②) ◦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동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 그 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44의2④)

① 퇴직연금 등의 범위(규칙 §23)

○ 손금산입 하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퇴직보험·신탁 폐지에 따라 2011. 1. 1.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되지 않습니다(법영 §44의2②, 2010. 12. 30. 개정).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은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0. 12. 30. 영 부칙 §19)

②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1]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2] 중 큰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3]	=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A)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5]	=	손금산입 한도액(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4]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5]	=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D)
손금산입 범위액 =(C)와 (D)중 적은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산입액 제외)을 말합니다.

○ 다음 ㉠, ㉡의 합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 산입액 제외)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장부상 기말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의 설정전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③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영 §44④을 적용하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영 §44의2③단서)

[3] 대손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 §34) ◦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계정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등의 범위

○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 대여한 금액

○ 기타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②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채권(법 §34③ 및 영 §19의2⑥)

○ 다음의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영 §61② 각호의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148, 2002. 9. 12)

☞ 1999.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경우 종전의 법인세법 §14①의 규정을 적용받던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한 것을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998. 12. 28. 개정법 부칙 §6③)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영 §19의 2⑦)

-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2]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 (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1)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1) 2018. 2. 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법칙§10의5)

☞ 2017. 2. 3.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 2023년 2월 27일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2023년 2월 28일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

○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영 §61②)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회사 등은 2%,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금융회사도 1% 적용)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B/S상 매출채권	+	세무조정 미수계상누락	+	당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	)	×	1/100 or 대손실적률
				=	대 손 충 당 금 손금산입범위액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2010. 2. 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채권·채무조정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영 §61④)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시행령 제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세과-2015, 2008. 8. 14.)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규칙 §32②)

④ 대손금의 처리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예시)
  -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예시)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 대금의 미수금
  -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 직원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 사업의 포괄양수과정에서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은 대손처리 할 수 없음.

○ 대손금의 범위

㉠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채무의 면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은 제외)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동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함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통칙 19의2-19의2…1)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 해산한 법인 등에 대한 채권
  -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에 대한 채권
  -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가 형의 집행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경영부실·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함.

㉢ 부도수표·어음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 익금으로 계상함.

  ☞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함.

- 대손처리 할 수 없는 부도수표·어음
  -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
  -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
- 부도발생일
  -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
- 법령§61②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 중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 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이나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법령§19의2⑤)
☞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19의2-19의2…5에 따라 처리 합니다(통칙 19의2-19의2…8).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30에 따른 결정('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의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기타의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손사유가 발생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대손금은 해당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함 (신고조정사항으로 취급)(영 §19의 2④)

☞ 2007. 2. 28.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손익(주식시가 - 출자채권) 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영 §72, 4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출자 전환시 적용(영 §15④)

☞ 2006. 2. 9 이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⑤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유예(조특법 §104의23)

2010. 12. 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감소되어 일시 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 대상법인 및 적용방법(선택사항)

-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2014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익금불산입액 계산

익금불산입액=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③ 익금유예 및 환입방법

○ 익금유예 방법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유예된 환입액 익금산입 방법

- 익금유예된 사업연도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보다 큰 경우 익금불산입한 유예금액과 상계(즉,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
- 잔액은 201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의 대손금과 상계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 §35)

①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법인(영 §63①)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함)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소방산업진흥법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및 콘텐츠공제조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손금산입 범위액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대손금 범위

○ 영 §19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④ 익금산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며,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법 §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법 §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법 §38)
대상법인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국법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환경정책기본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전기·도시가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 수도사업	모든 법인
손금산입 요 건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 받아 사업시설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하거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산입 범 위 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사 용 시 익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다음의 금액과 상계 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 손금에 산입되는 감가상각비 × $\frac{\text{일시상각충당금}}{\text{자산의 취득가액}}$ ㉡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미사용시 익금산입	㉠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단,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제외)		
기 타	•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 2008.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국고보조금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함.(공사부담금은 2006. 1. 1.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2011. 1. 1. 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는 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 가능
단,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74)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가맹단체로 깆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고시하는 체육단체 ◦ 공익법인으로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등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 인구 30만명 이하이고 국립대학교병원·사립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조특칙 별표8의6)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frac{100}{100}$
(다)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104의12) * 2010.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신용회복목적회사	◦ 해당 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계상액

* 조특법 §9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13. 12. 31. 일몰종료)

7.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비에 해당하나,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법§28①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순서에 의합니다.

[1] 지급이자의 범위

○ 지급이자의 범위(집행기준 28-0-2②)

순서	종류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취지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당해 이자 (직접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기타사외유출)	사채이자 양성화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와 할인액	당해 이자 (직접 손금불산입)		금융실명제 정착
3	건설자금이자	당해 이자 (직접 손금불산입)	유보	자본적지출 성격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산식)	기타사외유출	재무구조개선 및 부동산투기 억제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법법§28①(1), 법령§51①)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제외

[2]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법법§28①(2), 법령§51②)

○ 소법§16①(1),(2),(5),(8)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④ 금융회사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3) 건설자금이자(법법§28①(3), 법령§52)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자본화 강제) 및 일반차입금(자본화 선택)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 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하며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령§52⑤).

○ <건설이 준공된 날의 판정> (법령§52⑥)
- 건물 : 소득령§162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과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 중 빠른 날
- 토지 :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해당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통칙 28-52…1)
-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사용개시일

③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차입금이자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강제적으로 자본화하여야 하며, 일반차입금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자본화(법법§28①(3))
-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되 특정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와 운영자금에 전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하지 아니합니다(법령§52②,③).

-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법령§52④).

○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금액 계산방법(법법§28②) : Min[ⓐ, ⓑ]

ⓐ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

ⓑ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특정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자본화 이자율*

* 자본화 이자율=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 일반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④ 건설자금이자를 비용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 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구 분		세무조정	
		당 기	차기 이후
비상각자산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시에 손금산입(△유보)
상각자산	당기말 현재 건설 중인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완공연도에는 건설자금이자 부인누계액을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시인부족액 발생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 (△유보)
	당기말 현재 건설 완료한 경우	법인 계상 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즉시상각의제)	

(4)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법법§28①(4), 법령§53)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합니다(법법§27, §28).

①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법령§53②)

○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text{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text{총차입금 적수}}$$

*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는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법인세 집행기준 28-53-1).

-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액으로 계산

○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위에 의하여 먼저 부인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과 동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 적수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지급이자	=	총지급이자	-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지급이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지급이자 * 건설자급이자
차입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지급이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지급이자 * 건설자급이자

②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법령§49)

○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유예기간(법칙§26①)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장용부지로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 초과 시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 기타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법칙§26⑤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제외

○ 동 산

-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
-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③ 가지급금 등의 범위(법령§53①)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령§61②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나,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합니다.(법령§53③, 법칙§28②)
  ☞ 법칙§44(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가지급금은 제외

④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가액(법령§53③)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령§72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포함합니다.

○ 업무무관자산 등의 적수 계산

-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그 합계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보유한 업무무관자산 등 모두를 포함

- 전기 이전에 취득·대여하여 이월되었거나
- 당기에 신규 취득·대여하였거나
- 사업연도 중에 양도·회수된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 보유기간일수에 대하여 적수 계산

※ 2001.3.28. 법칙§26⑨의 개정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나(동산 제외),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함

⑤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집행기준 28-0-2)

○ 차입금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며 해당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은 차입금에 포함합니다.

○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법령§53④)

- 금융회사(법령§61②) 등이 차입한 다음의 금액
  •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수신자금(예금증서의 발행 또는 예금계좌를 통해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관리·운영하는 자금)

-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 지급이자의 범위(집행기준 28-0-2②)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⑥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법칙§27)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 세무조정에 의한 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제외)

㉡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 계산 방법

• 추가납부세액 =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지급이자 손금부인액 등) × 종전 사업연도 세율 −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법법§23, 법령§24～34).

○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일부 신고조정 허용).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예외 ⇢ 별도 설명)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상각가능 합니다.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손금계상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통칙 23-0-1)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 영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3. 영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4.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 자산

① 감가상각 대상자산(법령§24①)

유형자산	무형자산
1. 건축물(건물 및 그 부속설비,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 및 식물 6.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자산	1.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 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철도시설관리권(철도시설관리권은 2025. 2. 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댐사용권 5. 개발비(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 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은 2012. 2. 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8. 그 밖에 1~7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

○ 영업권의 범위
-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법칙§12①(1))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법칙§12①(2))
  ☞ 종전 합병 또는 분할시의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삭제하였으며, 합병·분할 규정에 별도로 그 범위와 상각방법을 규정(법법§44의2③, 법령§80의3②)

②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법령§24③)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는 제외)
* 유휴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법칙§12③)
·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 건설 중인 것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토지, 서화, 골동품 등)

③ 기 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당해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법령§24④)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법칙§12③)
○ 설치중 또는 시운전기간중의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나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함(법칙§12④)

[2] 감가상각 방법

①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영 §26①, ④)

구 분	신고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 (아래 3, 5, 6, 7 제외)	정액법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 자산 (아래 4 제외)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정률법
3.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 '15. 2. 3.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해저광물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5.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상각 * 기부자산의 멸실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액 일시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 취득가액×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기 상각액)×상각률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법법§27의2②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
- 생산량비례법
  ① 광구에 속한 자산 : (취득가액÷총 채굴예정량)×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② 폐기물매립시설 : (취득가액÷매입예정량)×당해 사업연도의 매립한 량

②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영 §26①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위 외의 법인이 영 §26①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종류가 동일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③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신청기한 :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법령 §27②)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 변경사유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영 §26 ⑤)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영 §27①)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K-IFRS 도입 법인의 상각방법 변경사유 추가(201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상기 '5'의 사유로 201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1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령§27②).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법령§27③).

④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구 분	자산 계상 법인	감가상각 계상 법인
금융리스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
운용리스	리스회사	리스회사

☞ 2011. 1. 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리스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영 §24⑤)

[3]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① 취득형태에 따른 취득가액

○ 취득가액은 그 취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영 §72)

취 득 형 태	취 득 가 액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단,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자가 제조(건설)한 고정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합병·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 법령§80의4① 및 §82의4①에 따른 장부가액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은 제외) • 그 밖의 경우 : 해당자산의 시가 •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법령§72⑤1의3) : 합병법인 종전주식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 - 현금등 지급액
출연재산에 대해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함)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 단,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배출허용총량: 영(0)원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됩니다.

②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D/A이자, Shipper's Usance이자, Banker's Usance이자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

③ 특수한 사유 발생 시의 취득가액(법령§72⑤)

○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 : 그 평가액
-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즉시상각한 것으로 봄)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집행기준 23-31-2)

구 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추상적 구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구체적 구분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잔존 가액(영 §26⑥, ⑦)

○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합니다.
-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5] 내용연수와 상각률(영 §28)

○ 내용연수란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자산별·업종별로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내용연수 적용	비고
시험연구용자산	내용연수 선택불가 → 기준내용연수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건축물 등	내용연수 선택가능 → 기준내용연수, 신고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업종별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건축물 부속설비(냉난방·급배수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업종별 3~25년) 적용 가능

○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열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령§28①(2)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영 §28 ②)

○ 법 §6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

$$\text{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의 월수}}$$

②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영 §29)

㉠ 법인은 특정 사유 해당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 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령§29①).

㉡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법령§29②).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법령§29⑤).

㉣ 2년 연속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대상 서비스업) 영위 기업이 2015.12.31.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설비투자자산 기준내용 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조특법§28, 조특령§25).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설비투자자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조특법§28의2, 조특령§25의2).

㉥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설비투자자산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ⅰ)의 자산은 7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조특법§28의3, 조특령§25의3).

(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한정) 등 조특령§25의2②에서 정하는 자산

(ⅱ) (ⅰ) 외의 기업 : 신성장사업화 시설 등 조특령§25의3③에서 정하는 자산

㉦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202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

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28의4,조특령§25의4).

(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ⅲ)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③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영 §29의2)

○ 대상자산

- 중고자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합병 등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2010. 12. 30. 영 §29의2② 신설)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음(예 : 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영 §29의2②)

-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계산시 취득가액은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6]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영 §32①)

○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됨.

○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함.

《예시》

부인누계액	당기 상각범위액	당기 회사상각액	당기 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30)을 한도로 손금 추인함. (차액 70은 차기이월)

②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영 §26⑨)

○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 사용월수 ÷ 12

○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없음.

③ 사업연도 변경,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 (영 §26⑧)

•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함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영 §28 ②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④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 (영 §32⑤, ⑥)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

$$\text{당해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 \times \frac{\text{양도부분의 가액}}{\text{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함.

⑤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영 §32③, ④)

○ 감가상각과 평가증(보험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을 병행한 경우에는
-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며,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함.
  -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 시인부족액은 소멸됨

◈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사례

구 분	계	건 물	기계 소계	기계 1	기계 2	비 품
세무상 상각범위액	150,000	100,000	30,000	10,000	20,000	20,000
회사계상 상각액	165,000	120,000	28,000	12,000	16,000	17,000
시 부 인 액	15,000	20,000	△2,000	2,000	△4,000	△3,000

⇒ 한도초과액 22,000원 손금불산입(유보)

[7]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 개발비 : 감가상각 대상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법령§24①(2)).
- 상각범위액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법령§26①(6))
- 미상각 개발비 :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법령§71⑤)
  -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법령 §24①(2)).

- 상각범위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사용수익기간·신고내용연수 기간 중 멸실·계약해지된 경우 미상각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법령§26①(7))
-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통칙 23-26…3)

○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합니다(법령§26①(8)).

[8]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법령§19)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의 사업양수·양도시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시 인수가액을 장부가로 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차례로 차감하고 남은금액은 자본 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로 B/S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령§24부터 §26까지, §26의2, §26의3, §27부터 §29까지, §29의2 및 §30부터 §3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령§19(5호의2), 부칙§3, 2002.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9] 감가상각의 의제(영 §30)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법§23①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 가능

* '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이전은 개정 전 참조)

[10] 즉시상각의 의제(영 §31)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 다음의 수선비 지출액을 사업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31③).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31④).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31⑥).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 '1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추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법§42③(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일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합니다(법령§31⑧).

(11)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28의2, 조특령§25의2)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을 2017.6.30.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 상기 특례를 적용하려면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은 2016.7.1.이후 취득분, 중견기업은 2016.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12)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28의3, 조특령§25의3)

○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설비투자자산)을 2018.7.1.~ 2020.6.30.과 2021.1.1.~2021.12.31.에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25의3②)
2) (그 외 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조특령§25의3③)
-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2019. 7. 3.부터 취득하는 자산은 75%)를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 상기 특례를 적용하려면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법법§23②, 2010. 12. 30. 개정)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선택사항).

① 신고조정 요건 및 대상자산

○ 적용요건 : 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② 신고조정 적용방법

○ 결산서 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용어의 정의(법령§26의2)
- 기준연도: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동종자산:기준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기존보유자산) 및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법칙§13①에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름)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 자산과 동일한 업종(법칙§13②에서 정하는 업종구분에 다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K-IFRS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
- 기준상각률:K-IFRS 도입 이전 상각률
- 결산상각방법: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

③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 2013. 12. 31. 이전 취득 자산(법법§23②(1), 법령§26의2①)
-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비(이하 "종전감가상각비"라 함)가 법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법§23②(1))
- (손금산입 한도) 다음의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법§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법령§26의2②)
  ㉠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기준상각률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26의2④(1))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미상각잔액 × 기준상각률
    * 기준상각률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26의2④(2))
    **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법령§26⑥단서 준용)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 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법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의 정률법과 같이 적용

○ 2014.1.1. 이후 취득 자산(법법§23②(2), 법령§26의3①)

-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가 법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법§23②(2))
- (손금산입한도) 기준감가상각비 적용대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법§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과 ㉢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법령§26의3②)

(손금산입한도) MAX(A, B)
A. 기준감가상각비(㉠)
B. 결산서상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 MIN(㉡, ㉢)[다만, ㉢×25%>㉡인 경우에는 ㉢×25%를 적용

㉠ 개별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 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각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법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 자산에 대하여 법법§23①에 따라 손

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종전에는 MIN(정률법에 따른 미상각잔액, 실제 미상각잔액)이었으나, '16. 2. 12. 이후 신고분부터는 실제 미상각잔액으로 변경되어 신고조정 방법이 간소화됨

* 위 ㉢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법 §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위 ㉢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가능(법령§26의3③)

(14)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법령§33)

○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감가상각비시부인 명세서
-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취득자산·취득일·취득가액 내역>

▪ 일반자산(내용연수 4년 선택)
- PC등(2025. 1. 1. 취득):6,000,000원
- 화물차(2025. 8. 1. 취득):4,500,000원
- 상각률(내용년수 4년):0.528

▪ 건 축 물
- 일반건축물(내용연수 40년 선택, 2024. 2. 25. 취득):31,000,000원
- 공장건축물(내용연수 20년 선택)
  - 공장 등(2025. 1. 27. 취득):17,200,000원
  - 창고 등(2025. 7. 25. 취득):8,000,000원

▪ 업종별 자산
- 업종(18:인쇄업):내용연수 5년 선택
  - 기계장치(2025. 1. 27. 취득):17,200,000원
  - 기계장치(2025. 7. 2. 취득):10,000,000원
  - 상각률(내용연수 5년):0.451

다.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요건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법§25①).
☞ (명칭변경) '24.1.1. 이후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변경

①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② 기타 기업업무추진비

○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영 §42②)

-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것임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채권포기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통칙 19의2-19의2…5)

○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 대한 기증금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으로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함

③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영 §42①)

○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영 §19(1의2)

④ 판매부대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예시

○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한 사례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함(서면-2022-법인-4053)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9-법인-2380, 2020.9.4.)
  -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인-1478, 2020.7.21.).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9-법인-2479)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해당 법인의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법규과-49, 2014. 1. 20)

○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

-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한 사례
  - 사업홍보 등 행사의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9-법인-2479)

-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세과-534, 2009. 5. 4.)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 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2820, 2008. 10. 9.)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22-법인-4409)

○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한 사례
  -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2020. 2. 4.)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이용객 및 매출액의 급감, 적자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도 회원에게 콘도시설 재건축 등에 필요한 동의를 구하는 약정을 통해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법인-4417)
  -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법인-602, 2013. 10. 31.)

[2]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1회 지출금액이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조특법§126의3④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법법§121 및 소득법§163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법§32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부가법§34의2②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국외지역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2012.1.1. 이후 지출분) 및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

② 법인세법 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외)로서 다음 ㉠[기본한도],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 $\frac{\text{당해 사업연도의 월수}}{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수입금액 한도 : (일반수입금액×적용율) + [(특정수입금액×적용율)×10%]

수입금액	적용율
가. 100억원 이하	0.3%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과 ㉡를 합한 금액의 50% 상당액을 한도로 함(법법§25⑤)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50%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특정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법법§25④), "일반수입금액"이란 특정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을 말함

○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과 ㉡을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함(조특법§136②)

③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추가(조특법§136③)

○ 2025.12.31. 이전에 지출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법§25④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에도 불구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에서 손금산입

④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추가(조특법§136⑥)

○ 2025.12.31.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

* 조특법§29③ 각 호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①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기업업무추진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임

☞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는 2006. 2. 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업업무추진비를 건설가계정·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

②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기업업무추진비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으로 하며, 증권회사 등의 경우 다음의 금액임(법령§42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 : 매출액+투자중개업 영업에 대한 보수·수수료의 9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매출액+집합투자재산운용에 대한 보수·수수료의 9배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매출액+운용수수료의 6배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출액+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

-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법령§63① 각 호의 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이 매출액임

(4)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① 기업업무추진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기업업무추진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음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② 1회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

1회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영 §41②)

○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장소(인근지역 안의 유사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농·어민(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현물기업업무추진비(규칙 §20②)

☞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재경부법인46012-155)

③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④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업업무추진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때

-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함.

  ☞ 한도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함.

㉡ ㉠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frac{\text{감액계상액 잔액}}{\text{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①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법령§50의2)

- 부가령§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9)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통계법§22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령§50의2②)

③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법령§50의2④)

○ 2016. 4. 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26. 4. 1.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 1. 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 법령 부칙 제26981호, 2016. 2. 12. 제14조

○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손금산입 방법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손금인정요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상 확인되는 업무사용 비율 만큼 인정(원칙)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0" → 전액 손금불산입 ③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부착의무대상 차량('24.1.1. 시행)으로서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0" → 전액 손금불산입

▪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승용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023-954호)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의미함.

○ 업무사용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구 분	내 용
계산방법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주행거리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 1,500만원(5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1,500만원(5백만원) 초과 하는 경우 : 1,500만원(500만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에는 500만원으로 함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1천5백만원(5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천5백만원(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③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법령§50의2⑥)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① 감가상각

○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상각

②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되,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

○ 위 시설대여업자 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산입 한도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400만원)*을 한도로

함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 800만원(400만원)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사용비율 - 800만원(400만원)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③)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함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800만원(4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④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업무외 사용금액은 사용자(소득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함

○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400만원)]*초과액은 유보 처분함

- 단 감가상각비상당액(임차차량) 한도초과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106①3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에는 400만원으로 함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800만원(4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등 손금불산입

①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처리방법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에는 400만원으로 함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함(법령§106①3다)

②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함

[6] 기타사항

①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법법§74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함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액의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 자료 ①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A법인*(12월말 법인)이 '25.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5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법령§42②)에 해당하지 않음

- '25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 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0,000원임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①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손금인정(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②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6,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차량유지비용 (20,000,000원)×사적사용 (30%) = 6,000,000원

③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미계상 세무조정 :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5년 = 40,000,000원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감가상각비 (40,000,000원)×사적사용(30%) = 12,000,000원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 (40,000,000)×70%】- Min【(40,000,000원×70%), 상각한도(8,000,000)】
  **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미달 시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 자료 ②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B법인*(12월말 법인)이 '25.1.10. 2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5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4,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7,000,000원임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법령§42②)에 해당하지 않음
** 20,000,000원÷5년 = 4,000,000원

□ (세무조정)

-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7,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천5백만원(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4,000,000원 = 7,000,000원

⊙ 자료 ③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C법인*(12월말 법인)이 '25.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5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③)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①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 세무조정

②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 간주업무사용비율 : 25%*
  * 손금산입한도(15,000,000) / 총비용(총 유지비 20,000,000 + 감가상각비 40,000,000)
- 차량관련 유지비 손금 부인액 1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유지비(20,000,000) - [총 유지비(20,000,000)×간주업무사용비율(25%)]

③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30,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감가상각비(40,000,000원) - [감가상각비(40,000,000)×간주업무사용비율(25%)]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감가상각비 (40,000,000)×25%】- Min【(40,000,000원×25%), 상각한도(8,000,000)】
  **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미달 시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마.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의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명칭변경)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 특례기부금(법법§24②(1)에 따른 기부금) 소득의 10%(20%)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 일반기부금(법법§24③(1)에 따른 기부금)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변경

[1]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며,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대상 기부금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례기부금(법법§24②)

○ 2023.1.1.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종전 50%한도 기부금은 삭제되고 특례기부금으로 개정되었으며,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추가(2022.12.31. 법법§24 개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5②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법령§38①)

④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10)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33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에 한합니다.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재정경제부장관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1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한국학교)주무관청은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 분기 말일까지 지정하여 고시(고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특례기부금에 해당)(법령§38⑥·⑦)
 * '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한국학교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법령§38⑧)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2018.2.13.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2.2. 이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학교는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법령§38⑨)

⑤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13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43①(1)에 따른 의료기관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상증법§50의3((1)~(4))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상증법§50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 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증령§38⑩에 따른 출연자 및 상증령§2의2①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4), (5) 또는 (8)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 재정경제부장관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주무관청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분기 말일까지 지정하여 고시(고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특례기부금에 해당)(법령§38⑥·⑦)
* '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 법인은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부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법령§38⑨)

② 일반기부금(법법§24③)

○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한술 등 공익성을 고려한 다음의 기부금을 말합니다.

○ 아래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령§39①(1))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3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32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85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5④(1)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법령§39①(1)바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 포함)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 비영리외국법인("해외지정기부금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
☞ 주무관청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추천
* '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법령§36①(1)다, 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는 당연 일반기부금단체에서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8.2.12. 이전 허가받은 경우에는 2020.12.31.까지 일반기부금단체로 인정

○ 다음 각 목의 기부금(법령§39①(2))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증령§14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12.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지출하는 분 및 동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분,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로당·노인교실에 지출하는 분을 추가합니다.

○ 다음 각 목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노인복지법」§32①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아동복지법」§52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31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32①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 주택
  2) 「노인복지법」§34①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38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58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합니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16①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19①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6) 및 (7)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6② 및 §10②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② 및 §7②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② 및 §12②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34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업」§12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35①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31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자선, 활동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56①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③ 기타기부금

○ 상기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2] 기부금의 가액 등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금액임
- 법법§24②(1)에 따른 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법§24③(1)에 따른 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이며
- 그 외의 경우에는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법령§36②)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법령§36③)

(3)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법령§36②,③)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4]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① 특례기부금 (舊조특법 §73①. 14호 제외)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1] − 법법§13①1호의 이월결손금[2]) × 50%

1) 차가감소득금액 - 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 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손 + 특례 기부금 지출액 + 일반기부금 지출액
2)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2019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법법§13①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법§13①1호의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이월액 포함) × 10%(20%*)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2(1)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④ 그 외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기부금(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기부금 등)

[5] 기부금의 이월공제(법법§24⑤,⑥)

○ 손금불산입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

☞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2019.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법법 부칙 제16008호, 2018. 12. 24. 제4조)

☞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2020.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112의2 ①)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작성대상

2008. 12. 31까지	2009. 1. 1~12. 31	2010. 1. 1부터
연간 100만원 초과	연간 50만원 초과	전 액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법법§75의4)

1)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3)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

(6)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법령§39①(1) 바목)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93①(1) 부터 (3)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

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정 취소(법령§39⑧)

1) 법인이 상증법§48②, ③, ⑧~⑪, 상증법§78⑤(3), ⑩~⑪에 따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기법§85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공익법인 등이 해산한 경우

바.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1] 공동경비

○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영 §48)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비출자 공동사업 영위 시
◦ 출자금액 비율로 분담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약정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의 비율)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 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법인이 선택 가능하며 선택 시 5년 의무 적용) ☞ 미선택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임 - 참석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행사비 : 참석인원비율 -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구매비 : 구매금액비율 - 국내광고 : 국내매출 기준 - 국외광고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 제외) -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규칙 §25④)
-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거래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급비용

법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기간 중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등의 제공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합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법 §52)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영 §88)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

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저가양도·저가발행 제외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및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익분여를 하는 경우
  ☞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제외
  •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⑦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상증법§40①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법령§19(19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외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

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법령§88③, ④)

○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분여이익이 시가의 30%에 미달할 때에는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법령§89⑥)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법칙§42의6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다만, 해당주식이 상증령§53⑧에 해당하는 주식*은 할증제외)에는 20% 할증을 적용함(법령§89①)

-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함

☞ 2022.3.1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시의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에 규정)(법령§89③)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이하 “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법§42①).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은 평가 여부를 선택하여 평가손익 인식 가능

○ 평가차손익

-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법령§76④)
- 이 경우,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임

○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거나,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최초로 동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및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법령§76②,⑥,⑦)

-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법령§76③)

○ 상환차손익

- 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영 §76⑤)
-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평가차손익

-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법령§76④)
- 이 경우,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임

○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거나,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 최초로 동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및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법령§76②,⑥,⑦)
-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법령§76③)

○ 상환차손익

- 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법령§76⑤)
-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주요통화별 결산 환율

통 화(Currency)			고 시 환 율		비 고
			2025. 12. 31. 현재	2024. 12. 31. 현재	
미 국	달러	USD	1,434,90	1470.00	
일 본	엔	JPY	917.63	936.48	100엔당
유 로	유로	EUR	1,685,72	1528.73	
(독 일)	마르크	DEM	EUR통화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	〃	
(이탈리아)	리라	ITL	〃	〃	
(벨기에)	프랑	BEF	〃	〃	
(오스트리아)	실링	ATS	〃	〃	
영 국	파운드	GBP	1,932.31	1843.67	
캐 나 다	달러	CAD	1,047.72	1023.96	
스 위 스	프랑	CHF	1,811.97	1626.38	
홍 콩	달러	HKD	184.51	189.30	
스 웨 덴	크로네	SEK	155.97	133.23	
호 주	달러	AUD	961.02	913.68	
덴 마 크	크로네	DKK	225.69	204.98	
싱 가 폴	달러	SGD	1,117.52	1081.08	
중 국	위안	CNH	204.76	201.27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8.56	9.11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45.62	43.00	
쿠 웨 이 트	디나르	KWD	4,659.52	4770.56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354.56	329.23	
노 르 웨 이	크로네	NOK	142.78	129.62	
뉴 질 랜 드	달러	NZD	831.02	828.27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	382.56	391.4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390.67	400.22	
바 레 인	디나르	BHD	3,806.10	3896.62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법인46012-462, 2000.2.17.).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조회')에서 조회 가능(단, CNY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고시하지 않습니다)

[5]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평가대상 자산	평 가 방 법		
	신고시:신고한 방법	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 시
▸ 재고자산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	- 부동산 : 개별법 -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유가증권 - 일반회사 보유 - 투자 회사 보유	- 원가법중 • 개별법(채권에 한함)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시가법	- 원가법중 총평균법 - 시가법	- 총평균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시가법

☞ K-IFRS 도입에 따라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201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파손품 등의 평가(법법§42③1, 법령§78③1)

-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법§42③3～4, 법령§78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2010.2.18. 이후 평가분부터는 상장주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정주주(지분율 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보유한 부도 등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액 허용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며,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보는 것임(법령§78③)

8.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 소득처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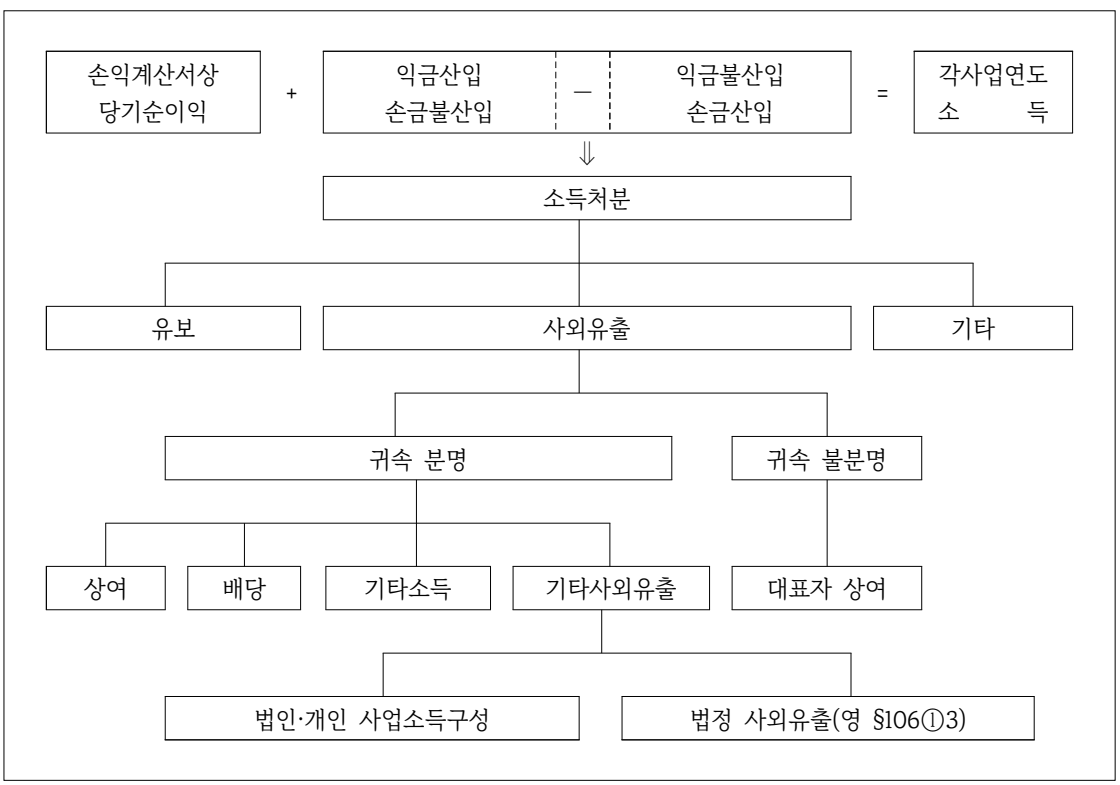

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영 §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45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영 §106 ④)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는 경우

종 전	개 정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2] 상 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직원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함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영 §106①.1호 단서)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소득 처분함(규칙 §54)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세법 §135④)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소득영 §49①(3))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 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직원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법 §17 ①(4)),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발생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세법 §131②)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 §46(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예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직원·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됨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소득세법 §145의2)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 §50 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 (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 가산 •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계상 •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기업업무 추진비	• 한도초과액 •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당기미지급기부금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직원(임원 포함) •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익금산입 〃 〃 〃	배 당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이 자	• 건설중인 자산분 •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 부동산등 지급이자	•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각 종 준비금	• 범위초과액 • 과소환입 • 과다환입 •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 보 〃 유 보
	•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 충 당 금	• 범위초과액 •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
퇴 직 보험료	• 범위초과액 •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손충당금	• 범위초과액 •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 당기평가감 •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 당기평가증 •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국 고 보조금등	•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 가 상 각 비	• 당기부인액 •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업무용 승용차	• 업무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 〃 〃	배 당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유 보		
	•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기 타	• 법인세 등 • 벌과금, 과료 •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 영 §88 ① 8호·8호의 2·9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 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기 타 기 타

9.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정이 끝나면 조정사항을 합계하기 위해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자료의 의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봅시다.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수입배당금	3,000,000	수입계상 누락분
재고자산평가감	770,000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퇴직급여충당금	840,000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134,000	한도초과액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560,000	한도초과액
인정이자	130,000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금과공과	654,000	토지매입에 다른 취득세
잡비	75,000	벌과금
건설자금이자	2,34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토지)
법인세 등	2,000,000	중간예납 등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재고자산평가감	380,000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분 중 당기사용분
감가상각비	1,340,000	전기 부인누계액 중 당기 용인액
수입이자	22,000	국세환급금 이자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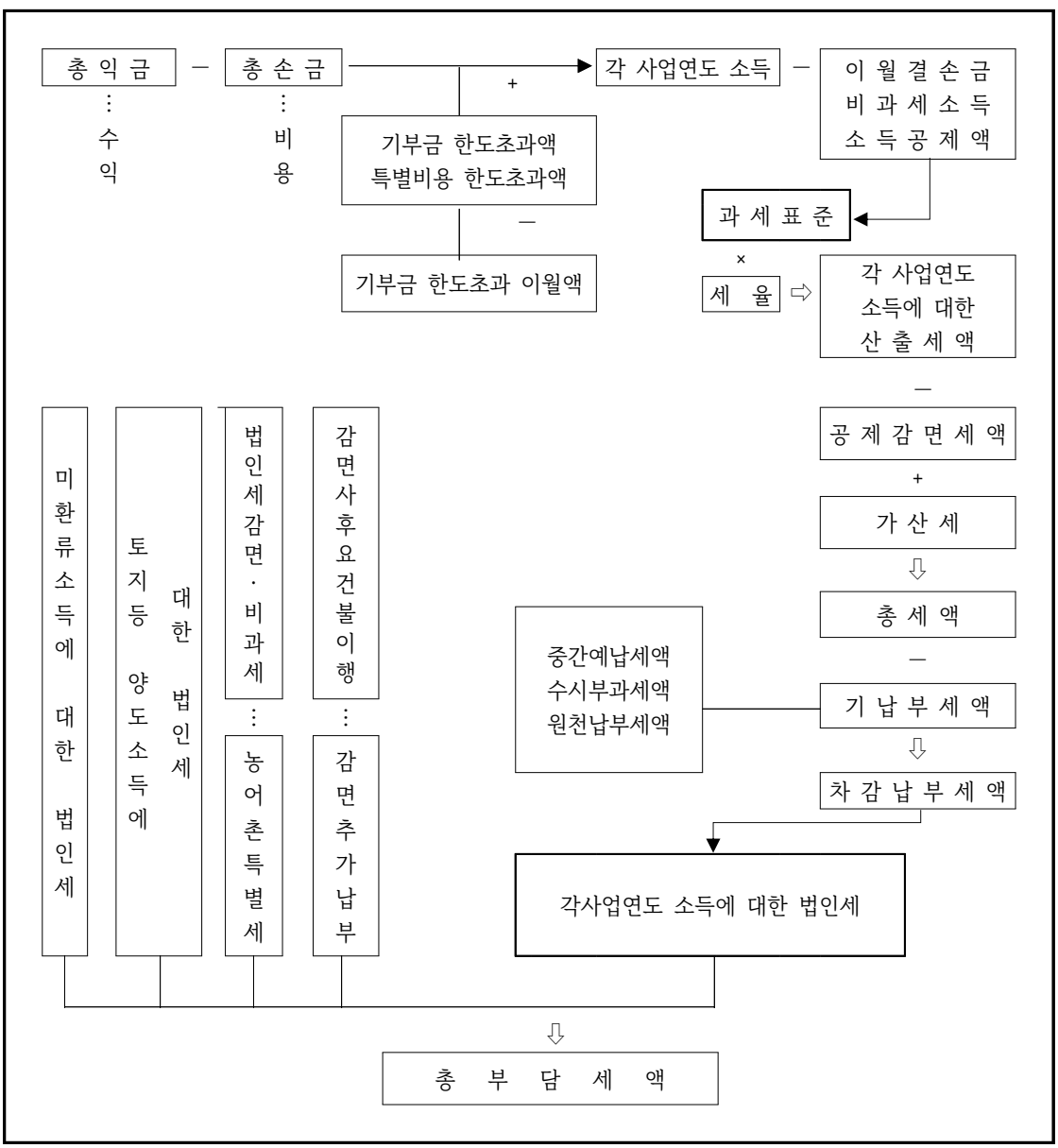

1. 과세표준의 계산

각사업연도소득	−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 ①→②→③의 순서로 공제액을 계산(법 §13)

가. 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의 범위

○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 §13)
-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 12. 31.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통칙 13-10…1)

○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68 본문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됩니다.(규칙 §4②)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법법§13, 법법§91① 및 법령§10①).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일반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2018년 귀속 : 70%, 2019년 귀속 : 60%, 2023년 귀속 : 80%
-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현행 유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법령§10①)
- 법원 인가결정에 의한 회생계획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21. 2. 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법법§51의2① 각 호 및 조특법§104의31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조특법§74① 각 호 및 조특법§74④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법령§10②).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과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법령§10③).
  *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법법§68).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법법§91①).

○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만을 공제합니다(법칙§4①).

○ 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 사업소득 제외)에서 공제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 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적격분할의 요건(법법§46②)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법법§50의2, 법령§86의2)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 총액의 70%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이상이며,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종전 사업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나.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 §51)
- 1990. 12. 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 1983. 1. 1.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주택은행의 것은 1982. 1. 1.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1998. 12. 28. 법 부칙 제12조, 법률5581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출자로 인해 받는 배당소득(조특법§13)
  -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 회사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출자(2014.1.1. 이후 출자분부터)
  -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조특법§13의4)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투자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

•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

[2] 비과세소득 등의 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2호의 비과세소득과 제3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규칙 §5)

다. 소득공제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법§51의2, 법령§86의2, 조특법§104의31, 조특령§104의28)

○ 대상법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소득공제 금액
-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당기순이익 등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제외(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다만, 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포함 (법령§86의3①)>
- 배당금액이 최초 기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인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단,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하지 않는 경우 이월공제 미적용(법법§51의2④)
  * 최초 기준금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2023.1.1.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법§51의2④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공제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단,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하지 않는 경우 이월공제 미적용(법법§51의2⑤)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소득공제 배제대상(법법§51의2②)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개인 등(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명 칭	대상법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기한	비 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5의2)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149㎡ 이하)	소득금액 × $\frac{100}{100}$	최초발생 연도와 그후 5년간	* 2009. 12. 31. 이전 국민주택 신축 또는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 소득금액×50%
		주택임대소득 (85㎡ 이하)	소득금액 × $\frac{100}{100}$	최초발생 연도와 그후 8년간	* 2016.1.1.이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104의31)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	배당금 전액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법§51의2①(1)에서 이관 (2019.12.31.)

2. 납부세액의 계산

가. 산출세액의 계산

○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1] 법인세율(법 §55)

과세 표준	세 율							
	2010.1.1. ~ 2011.12.31.	2012.1.1. ~ 2017.12.31.	2018.1.1. ~ 2022.12.31.	2023.1.1. ~ 2024.12.31.	2025.1.1.~2025.12.31.		2026.1.1.~	
					일반	소규모	일반	소규모
2억 이하	10%	10%	10%	9%	9%	19%	10%	20%
2억 초과	22%	20%	20%	19%	19%	19%	20%	20%
200억초과		22%	22%	21%	21%	21%	22%	22%
3,000억 초과			25%	24%	24%	24%	25%	25%

* 소규모 법인 : 법법§60의2①(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 조특법§72① 각 호의 조합법인은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과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2028.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 다만,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5% 적용)

☞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과세표준) 세무조정 사항 추가(조특령§69①)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외에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해 공정과세에 필수적인 세무조정사항(과다경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금·대손충당금) 추가(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text{법인세산출세액} = \left(\text{과세표준}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월수}}\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1] 면제(감면)세액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6)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생계형,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기본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18.5.29. 이후 '25.12.31. 이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 : 5년간 100% ▸ '18.5.28. 이전 청년창업 중소기업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 '18.1.1. 이후 '24.12.31.까지 창업·확인·해당하는 대상 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기업 :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 '18.5.29. 이후 창업한 연간수입금액 80백만원('22.1.1. 이전 48백만원 이하): 수도권 외 100%, 수도권 내 50% - (추가감면)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2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 - (감면한도) 5억원 ('25.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table>
<tr>
<td>②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7)
* 2005.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td>
<td>-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td>
<td>
<table>
<tr><th>구분</th><th>소재지</th><th>업종</th><th>감면율</th></tr>
<tr><td rowspan="9">소기업
중기업</td><td rowspan="3">수도권</td><td>제조업 등</td><td>20</td></tr>
<tr><td>도소매,의료업</td><td>10</td></tr>
<tr><td>통관대리 등</td><td>10</td></tr>
<tr><td rowspan="3">수도권 외</td><td>제조업 등</td><td>30</td></tr>
<tr><td>도소매,의료업</td><td>10</td></tr>
<tr><td>통관대리 등</td><td>15</td></tr>
<tr><td>수도권</td><td>출판업</td><td>10</td></tr>
<tr><td rowspan="3">수도권 외</td><td>제조업 등</td><td>15</td></tr>
<tr><td>도소매,의료업</td><td>5</td></tr>
<tr><td>통관대리 등</td><td>7.5</td></tr>
</table>
* (한도) 기본한도 1억원-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1인당 × 5백만원
</td>
</tr>
<tr>
<td>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①,③)</td>
<td>-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td>
<td>-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td>
</tr>
<tr>
<td>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의2)</td>
<td>-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td>
<td>-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td>
</tr>
<tr>
<td>⑤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20)</td>
<td>-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td>
<td>-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td>
</tr>
<tr>
<td>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면제 (조특법 §21)</td>
<td>-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등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td>
<td>- 100% 면제</td>
</tr>
<tr>
<td>⑦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62)</td>
<td>-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 도시 또는 세종시로 이전 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 성장관리권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td>
<td>-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간 균등액 이상을 환입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2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이전 본사 근무인원 비율</td>
</tr>
<tr>
<td>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63)</td>
<td>-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이전 후 공장소득</td>
<td>-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 3년(2년)은 50% 감면</td>
</tr>
</table>

	* 본사가 함께 있는 경우 같이 이전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조특법§63의2)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본사 이전에 따른 소득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 3년(2년)은 50% 감면
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나주일반, 혁신·김제지평선·장흥바이오 식품·북평국가, 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담양 일반·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 하는 중소 기업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 법인세50% 감면
⑪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66)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 2014.1.1. 개정시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분을 과세로 전환(2015.1.1.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 × 조합원수 ×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한도)
⑫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6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 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	- 어로어업소득(3,000만원× 조합원수 ×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한도) - 어로어업소득외의 소득 중(1,200만원×조합원수 ×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한도)
⑬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68)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 법인 * 2014.1.1. 개정시 수입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과세로 전환 ('1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한도 - 부대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85의6)	-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2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 최저한세 적용 제외
⑮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6)	-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1호 임대 : 30% 감면(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 - 2호 이상 임대 : 20% 감면(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50%)
⑯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9의9)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업	- 5년간 100% 감면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 중견·대기업은 다음 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1,500만원 (청년 등 2,000만원)
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04의24)	- 내국법인이 국외(개성공업지구 포함)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고 국외사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① 완전복귀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4개 과세연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개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② 부분복귀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⑱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⑲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⑳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 기업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조의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㉒ 금융중심지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21)	-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010. 5. 14.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22)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식품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㉖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의 법인세 감면 (조특법 §141의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 2019.1.1. 이후 지역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입주하는 법인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감면(대상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근로자 2,000만원)
- 100%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제외), 그 외 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구분경리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통칙 113 - 156…6)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면제소득계산

①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 면제소득에서 차감

②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

○ 감면(면제)세액의 범위에 있어서 100%, 50%, 30%라 함은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당해 감면(면제)사업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뜻하므로
- 감면(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text{감면(면제)세액} = \text{산출세액(법인세법 §55)} \times \frac{\text{감면(면제)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비율(100\%, 50\%, 30\%)}$$

[2] 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법 §5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19).

▸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영 §94①)(직접 외국납부세액)**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0①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

▸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등**

- 공제한도

$$\text{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법인세과세표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외원천소득} \times \text{감면비율})}{\text{법인세과세표준}}$$

-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55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함(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
-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법§94②)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함(법령§94⑦, 집행기준 57-94-2 참조).
-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법법§57②).
  -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법§57②)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하지 않음(법령§94⑮)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법 §57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법인
  - 다음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약상대국으로부터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약체결국
      그리스, 르완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트남(2014.12.31.까지),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2013.12.31.까지),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요르단(2015.12.31.까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2014.12.31.까지), 체코(2019.12.19.까지), 카타르(2019.4.14.까지), 쿠웨이트, 태국(2012.12.31.까지), 튀니지, 튀르키예(2024.7.20.까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필리핀 등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관련 체결국과의 조세조약 체결내용(적용범위, 적용기간, 감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 §57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법인(영 §94 ⑨)
  -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 공제대상 세액(법령§94⑧)

$$\left[\begin{array}{c}\text{외국자회사의 해당}\\\text{사업연도 법인세액}\end{array}\right]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left[\begin{array}{c}\text{외국자회사의 해당}\\\text{사업연도 소득금액}\end{array}\right] - \left[\begin{array}{c}\text{외국자회사의 해당}\\\text{사업연도 법인세액}\end{array}\right]}$$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및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

* 제3국이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함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57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요건(영 §94 ⑬)
  -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외국법인의 소득이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거주지국'이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원천지국'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금액

$$\left[\begin{array}{c}\text{내국법인이 부담한}\\ \text{외국법인의 해당}\\ \text{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text{법인세액}\end{array}\right]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left[\begin{array}{c}\text{외국법인의 해당}\\ \text{사업연도 소득금액}\times\\ \text{내국법인의 해당}\\ \text{사업연도}\\ \text{손익분배비율}\end{array}\right] - \left[\begin{array}{c}\text{내국법인이 부담한}\\ \text{외국법인의 해당}\\ \text{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text{법인세액}\end{array}\right]}$$

○ 세액공제 계산서의 제출 (영 §94 ③~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경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등으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제출

○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법법§57의2)
- 공제대상요건(법법§57의2①)
  - 내국법인이 법법§57의2①1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
  - 간접투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법§57①,⑥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을 것

- 공제한도금액(법법§57의2②)

$$\text{공제한도금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left[\begin{array}{c}\text{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 \text{간접투자 외국납부법인세액}\end{array}\right]}{\text{법인세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에 간접투자 외국납부법인세액이 포함됨

②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 §58)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자산총액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 토지는 제외(법령§95①).

○ 공제세액의 계산 (규칙 §49 ①)

$$\left[\begin{array}{c}\text{법법§55의 산출세액 + 법법§75의3과} \\ \text{국세기본법§47의2부터 §47의5까지의 가산세액} \\ \text{−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end{array}\right] \times \frac{\text{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text{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

* 공제세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해손실 자산의 계산(영 §95 ②)

-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불명 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가액)
  ☞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지 않음
-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의 재해상실비율(칙 §49③)

$$\text{재해상실비율} = \frac{\text{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text{최초 재해발생 전 자산총액+최초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공제대상 세액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법§75의3과 국세기본법§47의2부터 §47의5까지의 가산세(법령§95③)

○ 세액공제 신청기한(영 §95 ⑤)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46012-2794, 1999. 7. 15)

○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음(법령§95⑥).

③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 §58의3)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환급과 달리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 사업연도의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사유 외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공제세액의 계산 (영 §95의3)

$$\text{과다 납부한 세액} \times \frac{\text{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text{과다 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7의4	•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5% - 지급기한 16일~30일내 지급금액 × 0.3% - 지급기한 31일~60일내 지급금액 × 0.15% * 세액공제한도 : 법인세의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조특법 §8의3	○ 출연금액×10%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비중 × 3배]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25%+α)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 연구개발 × 최대 40%[3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비중×3배)]

<table>
<tr><td></td><td></td><td>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최대 40% [30%+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비중 × 3배)]</td><td>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최대 50% [40%+(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R&D 비중 × 3배)]</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
× 25%
② 당해연도 R&D비용 × [기본 0% + (매출액 대비 R&D 비중 × 1/2배*]
* 최대 2%</td><td>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발생액 초과금액 × 50%
② 당해연도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20%, 그 이후 2년간 15%</td></tr>
<tr><td>※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직전 2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40%
②당해연도 R&D비용×8%</td><td>☞ 중견기업(조특영 §9④)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td></tr>
<tr><td>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td><td>조특법 §12의3</td><td colspan="2">◦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td></tr>
<tr><td>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td><td>조특법 §12의4</td><td colspan="2">◦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td></tr>
<tr><td>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td><td>조특법§19</td><td colspan="2">◦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td></tr>
<tr><td>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td><td>조특법§24</td><td colspan="2">◦ (공제대상) 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일부 유형자산(①제외)과 무형자산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colspan="3">기본(%)</td><td rowspan="2">추가
(%)</td></tr>
<tr><td>대</td><td>중견</td><td>중소</td></tr>
<tr><td colspan="2">일 반</td><td>1</td><td>5(7)</td><td>10(12)</td><td rowspan="4">10</td></tr>
<tr><td colspan="2">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8)</td><td>12(14)</td></tr>
<tr><td colspan="2">국가전략기술</td><td>15</td><td>15</td><td>25</td></tr>
<tr><td></td><td>반도체 기술*</td><td>20</td><td>20</td><td>30</td></tr>
</table>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 5% p 상향('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 을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관련규정</th><th>공 제 금 내 역</th></tr>
<tr><td>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td><td>조특법
§25의6</td><td>○ 기본공제(5/10/15%)+추가공제(10/10/15%)
* ’24.1.1.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23.12.31.이전 발생분은 기본공제율 3/7/10% 적용</td></tr>
<tr><td rowspan="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td><td rowspan="2">조특법
§29의4</td><td>○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20%
(중견기업 10%)
* '25.12.31.이전 발생분은 기본공제율 3/7/10% 적용</td></tr>
<tr><td>•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20%(중견기업 10%)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받은 상당액 추가납부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 ’25.12.31.까지 적용 가능</td></tr>
<tr><td>통합고용세액공제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td><td>조특법
§29의8</td><td>■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 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th><th rowspan="2">중견
(3년)</th><th rowspan="2">대기업
(2년)</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able>
* 청년 범위: 15~34세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중소</th><th>중견</th></tr>
<tr><td>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td><td>1,300</td><td>900</td></tr>
</table></td></tr>
<tr><td>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td><td>조특법
§30의3</td><td>○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td></tr>
<tr><td>전자신고세액공제</td><td>조특법
§104의8</td><td>○ 직접 신고 :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 :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법인세 신고 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부가가치세 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td></tr>
</table>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22	◦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10% 세액공제 ◦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창단 후 5년간 20% 세액공제 ◦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25	◦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3%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30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 1% +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3%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2의4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의 비율을 선택하여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전년 초과금액의 50% 또는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6의6	◦ 성실신고 확인 지급수수료 비용 × 60%(150만원 한도)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조특법 §127 참조)

[3]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59①)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해당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④ 법 §58의3에 규정한 세액공제(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다만, 최저한세 대상인 감면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조특법§132④).

* 서면-2020-법인-40041(2021.3.8.)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①의 직접감면액과 ②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의 합계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특법§100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최저한세의 계산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납·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조특법 §132)

가. 적용대상 법인

(1)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나. 적용범위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55의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조특법§100의32), 외국법인의 지점세,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 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 각종감면후의 세액 • 소득공제금액·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비과세 금액, 세액공제금액,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적용 후의 세액	중큰금액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최저한세율 • 소득공제금액·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비과세 금액, 세액공제금액,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전의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

3.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4. 최저한세 계산 후에 공제하는 금액 • 외국납부세액 • 재해손실세액 • 기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

* 최저한세 적용세율

구 분	과세표준	'11~'12년	'13년	'14년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9%	9%
	100억 이하	10%	10%	10%
	1천억 이하	11%	12%	12%
	1천억 초과	14%	16%	17%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조특법 §132①)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 등(조특법§132①2)

「조특법」§8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액의 특례 등
§8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0의2	연구개발관련 출연준비금 등의 과세특례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8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28조의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55의2④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60②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③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2①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63의2⑤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조특법§132①(3))

- 조특법§7의2, §7의4, §8의3, §10(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이하 같음), §12②, §12의3, §12의4, §13의2, §13의3, §19①, §24, §25의6부터 §25의8까지, §26, §29의2부터 §29의5

까지, §29의7, §29의8, §30의3, §30의4, §31⑥, §32④, §99조의12, §104의8, §104의14, §104의15, §104의22, §104의25, §104의30, §104의35, §122의4① 및 §126의7⑧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132①(3))

③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조특법§132①(4))

- 조특법§6, §7, §12①·③, §12의2, §21, §31④·⑤, §32④, §62④, §63(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64, §68(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96, §96의2, §99의9, §10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부터 §121의22까지, §121조의33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조특법§132①(4)),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6①·⑥, §12의2, §99의9, §121의8, §121조의9, §121조의17, §121의20부터 §121의22, §121조의33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 §6⑦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①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위 "[1]"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적용 전의 과세표준

② 최저한세의 계산

최저한세의 계산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 후 소득금액 =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 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손금산입)

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①'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③ 차가감소득금액 = '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 +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금액

④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 '③' - 소득공제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⑤ 최저한세 = '④' × 최저한세율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소득공제·비과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한함

* 각종 감면 후의 과세표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

[3]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세 등의 범위(조특령§126①)

다음의 가산세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가산세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② 이자상당 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 가산액

③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4] 최저한세 계산 후에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 등의 범위(조특영 §126②)

법인세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합니다.

① 외국납부세액(법법§57)
② 재해손실세액(법법§58)
③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법§58의3)
④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조특법§10)
⑤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조특법§22)
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
 *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2007.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⑦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의2)
⑧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66·§67)
⑨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85의6)
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4의24)
⑪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⑫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121의4)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8)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⑭ 제주투자진흥지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9) 등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5]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조특영 §126⑤)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그 미달하는 세액 만큼 적용 배제함

②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한 법인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함
 - 각종 준비금(조특법§132①(1)에 규정된 것)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조특법§132①(2)에 규정된 것)
- 세액공제(조특법§132①(3)에 규정된 것)
  -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동일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함
- 세액감면(조특법§132①(4)에 규정된 것)
- 비과세·소득공제(조특법§132①(2)에 규정된 것)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조특법§144①)

②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함(조특법§144②)

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 §72, 영 §110)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적용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 §72 ①, ④)

나. 환급신청 방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72 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공제됩니다.

○ 법 §13①(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 §72 ①)

다.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 소급공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합니다.(법 §72 ③)

라.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한도로 합니다(법령§110①).

- 여기서「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신청세액의 계산(법법§72①)

- 아래 ①(한도액)과 ②(계산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마. 환급세액의 추징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후 경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조특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법법§72⑤, 법령§110⑤)

* 이자 상당액=환급추징세액×대상기간×22/100,000(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기령§43의3②에 따른 이자율(*))

(*) 2012.2.2. 이후 최초로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국기칙§19의3)
['12.2.2.~'13.2.28.] 4%, ['13.3.1.] 3.4%, ['14.3.14.] 2.9%, ['15.3.6.] 2.5%, ['16.3.7.] 1.8%, ['17.3.15.] 1.6%, ['18.3.19.] 1.8%, ['19.3.20.] 2.1%, ['20.3.13.] 1.8%, ['21.3.16.] 1.2%, ['23.3.20.] 2.9%, ['24.3.22.] 3.5%, ['25.3.21.] 3.1%

IV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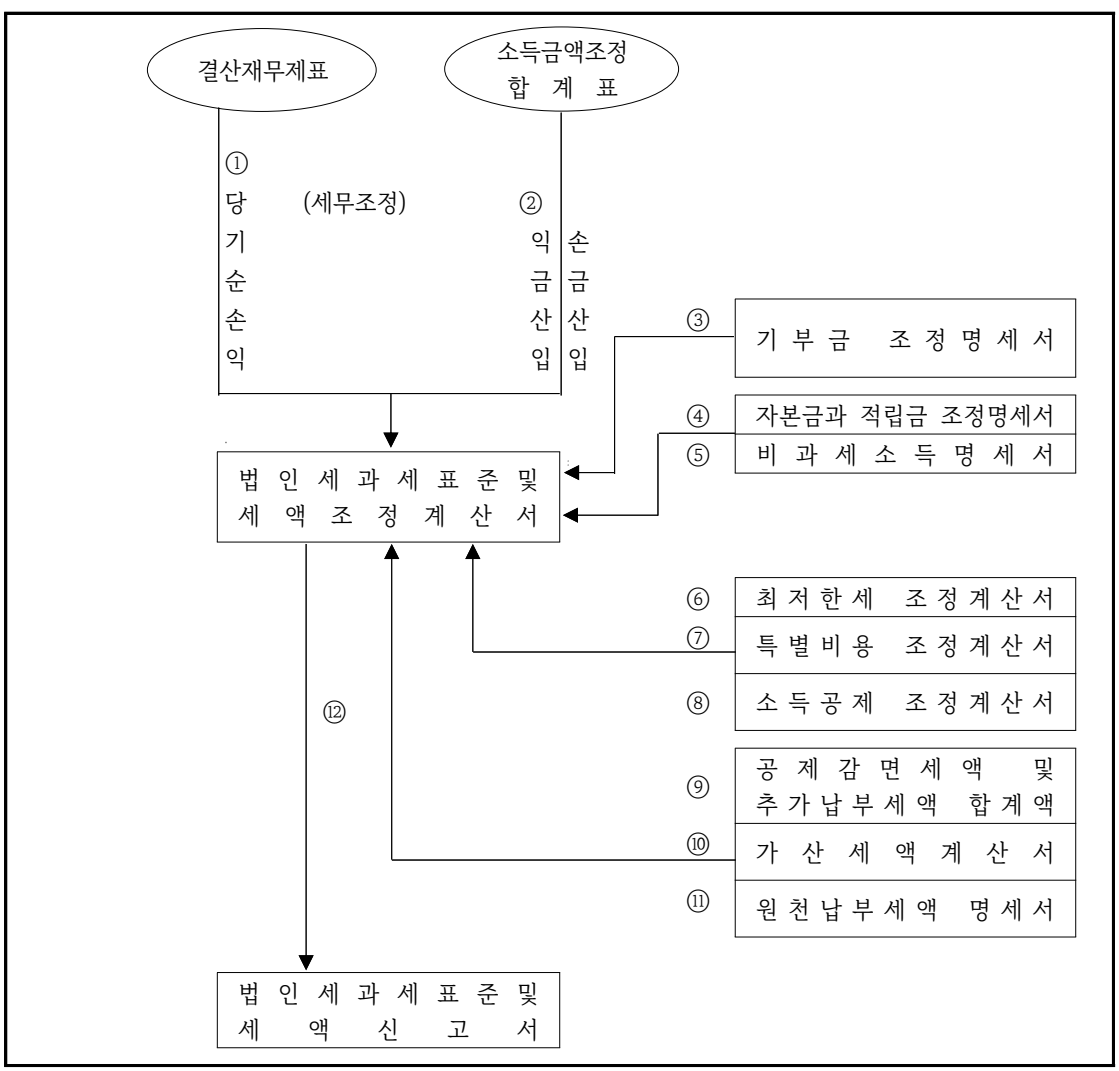

통 화 명	2월 2일(월)	2월 3일(화)	2월 4일(수)	2월 5일(목)
미 달 러 (USD)	1436.70	1457.30	1449.00	1451.20
위 안 화 (CNH)	206.79	209.87	208.90	209.23
일 본 엔 (JPY)	924.01	936.66	930.19	925.39
유 로 화 (EUR)	1701.20	1718.59	1712.50	1713.43
영 국 파 운 드 (GBP)	1963.18	1991.76	1984.99	1980.82
캐 나 다 달 러 (CAD)	1052.07	1065.20	1062.12	1061.79
홍 콩 달 러 (HKD)	183.90	186.56	185.46	185.76

통 화 명	2월 6일(금)	2월 9일(월)	2월 10일(화)	2월 11일(수)
미 달 러 (USD)	1464.10	1470.30	1464.30	1457.70
위 안 화 (CNH)	210.86	211.82	211.40	210.84
일 본 엔 (JPY)	932.46	932.81	938.89	943.62
유 로 화 (EUR)	1724.49	1736.72	1743.98	1733.28
영 국 파 운 드 (GBP)	1981.00	1999.61	2005.21	1987.21
캐 나 다 달 러 (CAD)	1068.06	1075.45	1079.67	1075.75
홍 콩 달 러 (HKD)	187.37	188.18	187.36	186.45

통 화 명	2월 12일(목)	2월 13일(금)	2월 19일(목)	2월 20일(금)
미 달 러 (USD)	1454.40	1443.40	1443.10	1450.70
위 안 화 (CNH)	210.66	209.26	208.96	210.24
일 본 엔 (JPY)	949.29	944.73	932.63	936.15
유 로 화 (EUR)	1726.59	1713.39	1701.27	1708.13
영 국 파 운 드 (GBP)	1981.18	1966.13	1947.90	1953.80
캐 나 다 달 러 (CAD)	1071.26	1060.58	1053.78	1060.26
홍 콩 달 러 (HKD)	186.08	184.67	184.68	185.64

통 화 명	2월 23일(월)	2월 24일(화)	2월 25일(수)	2월 26일(목)	2월 27일(금)
미 달 러 (USD)	1448.70	1442.00	1445.80	1435.30	1424.50
위 안 화 (CNH)	210.04	209.58	209.80	209.27	207.91
일 본 엔 (JPY)	935.55	932.91	927.66	918.39	913.38
유 로 화 (EUR)	1709.47	1700.26	1702.28	1695.59	1680.70
영 국 파 운 드 (GBP)	1955.60	1945.91	1702.28	1946.12	1920.58
캐 나 다 달 러 (CAD)	1059.49	1052.90	1055.29	1049.58	1041.26
홍 콩 달 러 (HKD)	185.40	184.42	184.82	183.55	182.08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 : //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